국민의 착한금융 파트너

2023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KB 저축은행

2023년도 지배구조연차보고서 및

보수체계연차보고서의 내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2. 29.

KB저축은행 대표이사 서 혜 자 

목 차

제 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 1
나. 지배구조 현황 ····· 2
다. 관련 규정 ····· 4

2. 이사회 ····· 5
가. 역할(권한과 책임) ····· 5
나. 구성(이사) ····· 8
다. 활동내역 ····· 12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 18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 19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
가. 역할(권한과 책임) ····· 20
나. 구성 ····· 21
다. 선임기준 ····· 22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22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 25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 39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 39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50
다. 사외이사 교육 · 연수 ····· 50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 50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 53
바. 사외이사 평가 ····· 53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 54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 54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56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56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57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 57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57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 58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60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 61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61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 61

6. 감사위원회 ····· 61
가. 역할(권한과 채무) ····· 61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 63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64
라. 감사보조조직 등 ····· 65

7. 리스크관리위원회 ····· 65
가. 역할(권한과 책무) ····· 65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 ····· 66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67

8. 보상위원회 ····· 68
가. 역할(권한과 책무) ····· 68
나. 구성(보상위원회위원) ····· 6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69

9.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69

10.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69

제 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상위원회 ····· 70
가. 총괄 ····· 70
나. 구성 ····· 70
다. 권한과 책임 ····· 72
라. 보상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 75

2. 보수체계 ····· 77
가. 주요사항 ····· 77
나. 보수 세부사항 ····· 81
다.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및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보수 세부사항 ····· 82

[첨부] 관련규정 86
[별첨] 임원선임 심사표 130

제 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KB저축은행은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KB저축은행은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023년말 현재는 이사회 위원의 60%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 · 경영진 · 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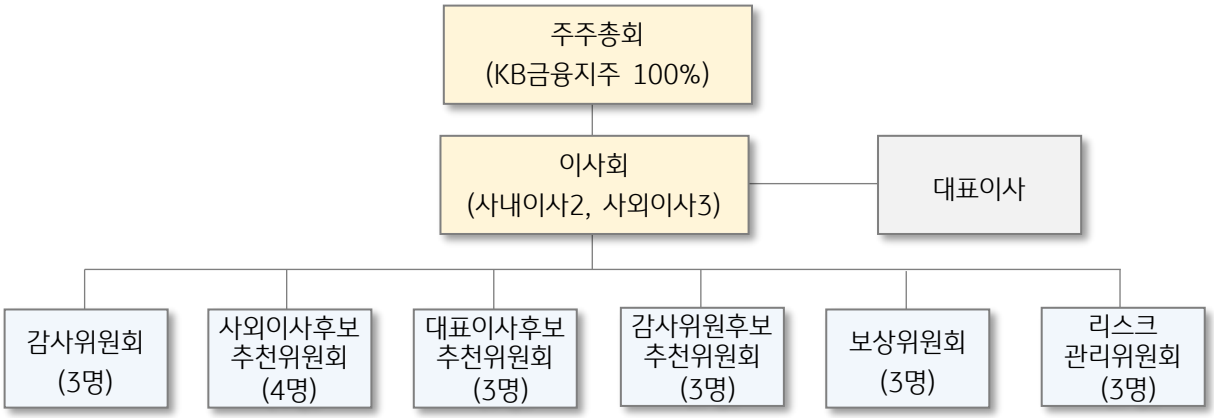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이사회규정 등 주요 내규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 이사회(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이사회내 위원회)·사외이사 등의 활동에 대한 회사 평가결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 : www.kbsavings.com)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 : www.fsb.or.kr)

KB저축은행은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대해서도 매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전략기획부(4명)에서 이사회 운영관련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내 위원회 지원 조직으로 감사부(4명)(감사위원회), 인사총무부(7명)(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부(7명)(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2) 지배구조의 특징

KB저축은행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KB저축은행은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6개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형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각 대상별로 지배구조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고 후보군의 운영 형태도 다를 수 있어 각 대상별 특성과 전문성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최고경영자후보를 추천하는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리스관리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상근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66%이상의 사외이사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지배구조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위원장* (사내/사외이사)	관련 규정
이사회	주요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3/5	허상철 (사내이사)	정관§39조 이사회규정§11조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대표이사 후보 추천	3/3	김홍달 (사외이사)	정관§51조 이사회규정§12조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3조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 후보 추천	3/3	김홍달 (사외이사)	정관§51조 이사회규정§12조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4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	3/4	박소라 (사외이사)	정관§51조 이사회규정§12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5조
보상위원회	보상정책 수립 및 성과 보상체계의 설계 운영 감시	3/3	박소라 (사외이사)	정관§51조 이사회규정§12조 보상위원회규정§3조
리스크관리 위원회	리스크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3/3	김자봉 (사외이사)	정관§51조 이사회규정§12조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3조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경영성과 평가, 개선	2/3	김홍달 (사외이사)	정관§51조 이사회규정§12조 감사위원회규정§3조

* FY2023 기준

*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중 1명을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음

다.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이사회규정
- 첨부3.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4.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6. 보상위원회규정
- 첨부7.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 첨부8.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9. 지배구조내부규범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KB저축은행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견제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서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당사의 이사회는 중장기적인 회사의 발전은 물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경영진으로 하여금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업무집행을 감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여러 분야에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 및 이사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경영목표 · 전략의 수립 및 평가

KB저축은행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지배구조법§15조1항1호, 정관§47조1항4호/5호)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경영목표·전략은 2023년 10월에 경영진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2023년 11월 그룹 경영계획 Review 및 경영진 회의 등 의견수렴을 통해 2023년 12월 개최된 제11차 임시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2024~2026년 경영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매분기 정기이사회에서 계획대비 경영성과를 보고하여 미흡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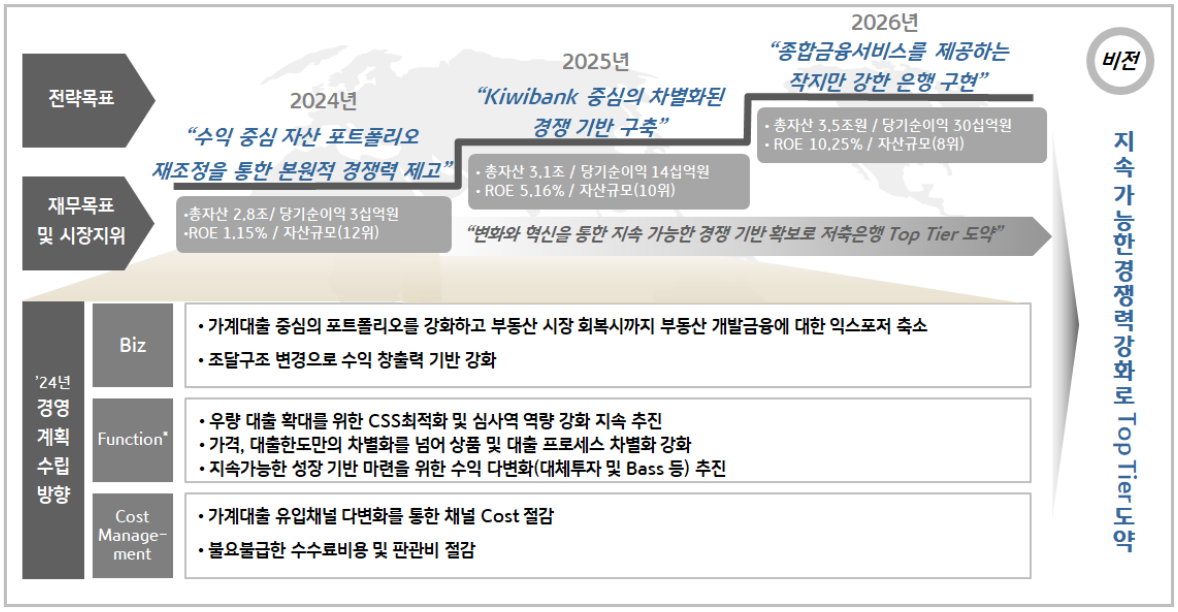
[2024년 경영계획 승인내용 요약]

III. 경영계획 수립방향

[참고] 3개년 단계별 시장 지위 Target

◆ 건전한 수익기반하에 Kiwibank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작지만 강한 은행 구축

- 가계대출 상품운영의 차별화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업무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 강화



*Function : HR, 채널, 고객, 상품 , Pricing 등

나) 정관 변경

KB저축은행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상정할 정관변경(안)을 의결하고 있으며(지배구조법§15조1항2호, 정관§47조1항11호), 2023년에는 정관변경이 없어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KB저축은행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임직원 보수 포함)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상정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 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15조1항3호, 정관§제47조1항6호) 이 경우 예산은 경영계획 목표·전략과 함께 심의·의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적인 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예산은 2024~2026년 경영계획 및 중장기 경영전략과 함께 2023년 12월 4일 개최된 제11차 임시이사회에서 승인 되었습니다.

2023년 결산 안은 금융감독원 사전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2024년 1월 31일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결손금처리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승인 받았습니다. 9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KB저축은행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도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15조1항4호, 정관§47조1항12호) 이 뿐 아니라 본·지점의 이전, 신설, 폐쇄 등 조직의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2023년 중 조직변경에 대해 의결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결일	의안명	목적
2023년 3월 23일 (제4차 임시이사회)	- 선릉역지점 폐쇄(안)	- 영업조직 효율화 및 조직 생산성 제고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KB저축은행 이사회는 경영계획목표와 전략에 부합하는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에 대해 심의 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15조1항5호, 정관§47조1항32호)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 · 정책의 수립 · 평가

KB저축은행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의 선임과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의 결정, 대표이사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경영승계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이사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15조1항6호, 정관§47조1항19호) 당사의 대표이사는 지주회사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 · 감독

KB저축은행 이사회는 대주주 및 임원 등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거래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15조1항7호, 정관§47조1항14호) 또한 그룹 내 계열사(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하여 금액 불문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중 「KB금융그룹 계열사와 그룹배너광고 제휴 계약」 등 총 48건의 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를 승인하였습니다.

아) 기타

이 외에도 이사회는 주주총회 및 경영에 중요한 사항, 주식과 사채에 관한 사항은 물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회사 경영상 중요한 내용에 대해 의결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체계를 갖추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정관§47조2항)

나. 구성(이사)

1) 총괄

KB저축은행 이사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정관§39조1항 및2항)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회사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5명의 이사(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사외이사 3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정관§43조1항)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 이사의 잔여임기로 하고(정관§43조2항),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봅니다.(정관§43조5항 및6항)

이사의 자격요건은 내규 및 외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지배구조법§5조 및6조, 지배구조내부규범§7조 및8조)

2023년 말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사외이사 3명(금융전문가 2명 포함)으로 각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이사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이사회 의장은 당사 규정(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당사 대표이사인 허상철 사내이사이며, 2023년 말 임기 만료에 따라 2023년 12월 29일 개최된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2년의 임기로 서혜자 대표이사가 선임되었고, 2024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구성원

가) 이사회의장 / 대표이사 허상철

2021년 12월 29일 제3차 임시주주총회에서 2년 임기로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KB국민은행 유성도안지점장, 업무개선부장, 전략기획부장, 전략본부장, 남부지역영업그룹대표를 거쳐 KB국민은행 스마트고객그룹 전무를 역임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당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나) 상근감사위원 정신동

2021년 4월 5일 개최된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로 선임되었으며, 임기만료일은 2024년 4월 5일입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은행(1994년 1월 ~ 1998년 8월), 금융감독원(2003년 8월 ~ 2020년 1월) 경력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재임 기간 중 금융상황분석실 금융상황총괄팀장(부국장), 워싱턴사무소 소장, 거시건전성감독국 국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21년 4월 6일부터 당사의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다) 선임 사외이사 김홍달

2020년 12월 31일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 만료일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은행(1980년 1월 ~ 2000년 3월), 우리금융지주회사 및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01년 4월 ~ 2014년 7월), OK저축은행 수석부사장(2014년 7월 ~ 2017년 12월), 모네타자산운용㈜ 운용총괄이사(2020년 9월 ~ 2022년 1월)를 거쳐 현재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2019년 9월 ~ 현재), 건설공제조합 금융사업단장(2022년 1월 ~ 현재)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라) 사외이사 박소라

2020년 12월 31일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 만료일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2012년 9월 ~ 2018년 9월)를 거쳐,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2018년 9월 ~ 현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 김자봉

2022년 7월 29일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 되었으며, 임기 만료일은 2025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금융연구원에서 금융산업 및 제도연구실 및 중소서민금융연구실을 거쳐, 현재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위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참고 : 공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

기준일(2023.12.31.)과 공시일(2024.2.29.)현재 이사회의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12.31. 기준)

성명	상임/비상임/사외이사	직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허상철	상임	의장/대표이사	2022.1.1.	2023.12.31.
정신동	상임	상근감사위원	2021.4.6.	2024.4.5.
김홍달	사외이사	선임사외이사	2021.1.1.	2023.12.31.
김자봉	사외이사	사외이사	2022.8.1.	2025.7.31.
박소라	사외이사	사외이사	2021.1.1.	2023.12.31.

(2024.2.29. 기준)

성명	상임/비상임/사외이사	직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서혜자	상임	의장/대표이사	2024.1.1.	2025.12.31.
정신동	상임	상근감사위원	2021.4.6.	2024.4.5.
김자봉	사외이사	선임사외이사	2022.8.1.	2025.7.31.
심동욱	사외이사	사외이사	2024.1.1.	2026.12.31.
서종군	사외이사	사외이사	2024.1.1.	2026.12.31.

3) 요약 (2023.12.31.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기간*	담당 위원회
허상철	상임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2011. KB국민은행 유성도안지점장 2015. KB국민은행 업무개선부장 2017. KB국민은행 전략기획부장 2018. KB국민은행 전략본부장 2019. KB국민은행 남부지역영업그룹대표 2020. KB국민은행 스마트고객그룹 전무 現) KB저축은행 대표이사	2022. 1.1.	2023. 12.31.	24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정신동	상임	상근감사위원	1994.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2003.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 선임조사역 2007.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조기경보팀장, 거시감독팀장 2015. 금융감독원 금융상황총괄팀장 2016. 금융감독원 워싱턴사무소 소장 2019. 금융감독원 거시건전성감독국 국장 現)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2021. 4.6.	2024. 4.5.	33개월	감사위원회
김홍달	사외/비상임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1980. 한국은행 조사부 2001. 우리금융지주회사 전략기획부장 2008. 우리금융지주회사 전무 2014. OK저축은행 수석부사장 2020. 모네타자산운용㈜ 운용총괄이사 2019. 現)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2023. 現)건설공제조합 금융사업단장 現) KB저축은행 사외이사	2021. 1.1.	2023. 12.31.	36개월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김자봉	사외/비상임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1996.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 2004. 서울대(경제학), 고려대(경제학, 법학,경영전문대학원) 강사 2005.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07. 국무조정실 정부정책평가위원 2010. Stanford university visitiung scholar 2011. 금융정보분석원 자문위원 2013.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2013. 금융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 위원 2013.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3. OECDInfe Research Committee 위원 2017.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위원회 위원(은행분과) 2022. KDB인프라 자산운용 사외이사 現) KB저축은행 사외이사	2022. 8.1.	2025. 7.31.	17개월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박소라	사외/ 비상임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장	2012.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2018. 現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現 KB저축은행 사외이사	2021. 1.1.	2023. 12.31.	36 개 월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재임기간은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말까지 기준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에는 정기이사회 4회, 임시이사회 13회 등 총 17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7.6%(정기이사회 100%, 임시이사회 96.9%)입니다. 모든 안건은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위원에게 사전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는 1월, 4월, 7월, 10월에 개최 되었고, 임시이사회는 사유 발생 시에 필요에 따라서 개최됩니다. 정기이사회에는 분기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ㅇ 202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 회의일 : 2023.1.31.(화) 15:00 ~ 16:30(90분)
- 안건통지일 : 2023.1.26.(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허상철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1. 2022년 경영성과 보고 2. 회계규정 개정 보고 3. 경영자문역 계약 체결 보고 4. 집행임원 선임현황 보고 5. 2022년 4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내역 6. 2023년 준법지원부 사업계획(안) (2022년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포함) 7. 2023년 소비자보호부 사업계획(안) 8.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 자율진단 결과보고 9. KB금융그룹 내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보고 10. 2022년 4분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 11. 2022년 하반기 감사 결과 보고					
4. 의결안건						

1. 계열사간거래 포괄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이사회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이사회 의장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선임사외이사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KB스타클럽 플랫폼 운영을 위한 업무 위수탁 계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 회의일 : 2023.2.9.(목) 16:00 ~ 16:30(30분)
- 안건통지일 : 2023.2.6.(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허상철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보고사항 없음					
4. 의결안건						
1. 제1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제1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 회의일 : 2023.2.22.(수) 16:10 ~ 17:00분(50분)
- 안건통지일 : 2023.2.17.(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허상철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보고사항 없음					
4. 의결안건						
1.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2. 김포 통합IT센터 및 여의도전산센터 임대차 변경계약(안)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회의일 : 2023.3.9.(목) 11:00 ~ 11:45(45분)
- 안건통지일 : 2023.3.6.(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허상철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1. 제1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제1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3. 외부감사인 선임의 보고					

4. 의결안건						
1. 2023년 이사보수한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2023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부의(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MSP요율변경에 따른 통합MSP 변경계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 회의일 : 2023.3.23.(목) 14:00 ~ 15:00(60분)
- 안건통지일 : 2023.3.20.(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허상철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1. 2022년 4분기 감리 결과 보고 2. 2022년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 업무실적 보고					
4. 의결안건						
1. 선릉역지점 폐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가결
2. 저축은행 컨소시업 PF대출 자율협약 개정 동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가결
3. 건설사 보증 사모사채 기초 유동화 참여(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가결
4. 그룹 OP서비스 계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가결

ㅇ 2023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 회의일 : 2023.4.25.(화) 15:10 ~ 16:40(90분)
- 안건통지일 : 2023.4.20.(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허상철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1. 2023년 1분기 경영성과 보고 2. 2023년 1분기 KB금융그룹 내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보고					
4. 의결안건						
1. KB스타클럽 플랫폼 운영을 위한 비용 및 업무 계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가입 및 개정 동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펀드 출자(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이사보수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이사회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6.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 회의일 : 2023.5.23.(화) 16:20 ~ 17:30(70분)
- 안건통지일 : 2023.5.19.(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허상철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1. 회계규정 소관부서 변경 보고 2. 2023년 1분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보고					
4. 의결안건						
1. KB One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계약 부속 합의(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KB One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이용 계약 부속 합의(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 회의일 : 2023.6.22.(목) 15:40 ~ 16:30(50분)
- 안건통지일 : 2023.6.19.(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허상철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1. 2023년 1분기 감리 결과 보고					
4. 의결안건						
1. 2023년 디지털 광고대행사 선정(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KB One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계약 부속 합의 변경 계약(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김포 통합IT센터 및 여의도 전산센터 임대차 변경계약(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KB국민은행과의 광고게시 업무 위·수탁 계약(갱신)(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 회의일 : 2023.7.6.(목) 14:00 ~ 14:30(30분)
- 안건통지일 : 2023.7.3.(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허상철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보고사항 없음					
4. 의결안건						
1. 금융기관 차입(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 회의일 : 2023.7.20.(목) 15:50 ~ 16:40(50분)
- 안건통지일 : 2023.7.17.(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허상철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1. 2023년 상반기 경영성과 보고 2. 2023년 상반기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3. 2023년 2분기 KB금융그룹 내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보고 4. 2023년 2분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 5. 2023년 상반기 감사 결과 보고					
4. 의결안건						
- 결의사항 없음	-	-	-	-	-	-

ㅇ 2023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

- 회의일 : 2023.8.17.(목) 10:10 ~ 11:00(50분)
- 안건통지일 : 2023.8.11.(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허상철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보고사항 없음					
4. 의결안건						
1. 보유자금 운용처 확대를 위한 KB증권과의 거래(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펀드 투자(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

- 회의일 : 2023.9.19.(화) 14:20 ~ 15:30(70분)
- 안건통지일 : 2023.9.14.(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허상철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1. 2023년 2분기 여신감리결과 보고 2. 2023년 2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내역					
4. 의결안건						
1.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케이비-유암코 크레딧 제1호 PEF(가칭) 펀드투자(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포커스 메자닌 K-STAR 일반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 펀드투자(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 회의일 : 2023.10.19.(목) 14:30 ~ 15:30(60분)
- 안건통지일 : 2023.10.16.(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허상철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1. 2023년 3분기 경영성과 보고 2. 2023년 3분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보고 3. 2023년 3분기 KB금융그룹 내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보고 4. 2023년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4. 의결안건						
1.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광고 계약 체결(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KB데이터시스템과 KB SaaS 이용 및 구축 계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

- 회의일 : 2023.11.27.(월) 15:00 ~ 15:30(30분)
- 안건통지일 : 2023.11.22.(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허상철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보고사항 없음					
4. 의결안건						
1. KB국민은행과의 서비스표 등에 관한 사용계약 갱신(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KB-대성 중견기업 혁신 사모투자합자회사 펀드투자(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11차 임시이사회

- 회의일 : 2023.12.4.(월) 13:10 ~ 14:30(80분)
- 안건통지일 : 2023.11.29.(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허상철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보고사항 없음					
4. 의결안건						
1. KB저축은행 2024년 경영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2024년~2026년 KB저축은행 중장기 경영전략(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12차 임시이사회

- 회의일 : 2023.12.19.(화) 15:00 ~ 15:50(50분)
- 안건통지일 : 2023.12.15.(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허상철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1. 2023년 3분기 여신감리결과 보고 2. 2023년 3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내역 보고					
4. 의결안건						
1. KB저축은행 2024년 성과평가 체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지준유가증권 매입(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13차 임시이사회

- 회의일 : 2023.12.28.(목) 16:00 ~ 16:50(50분)
- 안건통지일 : 2023.12.22.(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허상철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1. 자금세탁방지(AML)업무 감사 결과 보고 2. 사외이사후보군 관리내역 보고					
4. 의결안건						
1.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부의(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KB헬스케어와의 재계약 체결(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의 여신거래약정 기한 연장을 위한 추가 약정 체결(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KB데이터시스템과의 2024년도 전산 설비 및 S/W 통합유지보수 계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KB저축은행은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 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매년 이사회 일정 종료 후 당해 연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평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이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이사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이사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등 7개 항목을 총점 35점 만점(항목별 5점 만점)으로 설문지 평가합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2023년 이사회 운영실태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 운영실태 평가 결과

항목	의사소통	전문성	소집절차	안건제공 수준	개최 시간	적시성	견제 기능	전체 평균
평균	5.0	5.0	5.0	5.0	4.8	5.0	4.8	4.9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당 금융회사의 주요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말 설문지를 통하여 직무평가를 수행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전문성과 경험, 전략에 대한 이해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이해도, 주주 및 고객가치 제고노력, 윤리경영노력, 참여도, 안건에 대한 사전준비,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 등 8개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각 총점 40점 만점(항목별 5점 만점)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2023년 사외이사 직무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외이사 직무평가 결과

항목	전문성	전략 이해도	경영진 역할이해도	주주·고객 가치제고	윤리경영	참여도	사전준비	의사소통	전체 평균
자기평가	4.7	4.3	4.3	4.3	4.7	4.3	4.7	4.7	4.5
동료평가	4.8	4.6	4.8	4.4	4.8	4.7	4.4	4.8	4.7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KB저축은행은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 제6조1항)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법률에 의해 사외이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 의장으로 허상철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당사는 2023년 1월 31일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2021년 1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김홍달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023년 말 허상철 대표이사 및 김홍달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2024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서혜자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김자봉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김자봉 사외이사는 해당분야의 탁월한 식견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서 우리회사의 사외이사로 3년째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지배구조법§13)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임원후보(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 및 제6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5조 및 8조,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4조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저축은행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임원추천후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각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3명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KB금융지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이사 후보에 대해 심사하여 추천하며, 회사의 목표와 비전,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 건전/윤리/준법 경영 등의 관점에서 후보에 대한 자격 요건을 검증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이외에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역시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되지 못한다.
*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3년도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회의 회의를 개최(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하였으며, 대표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에 대한 자격 검증을 수행하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나.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3명,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3명,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각 위원회 별 사외이사 비율은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100%,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B 저축은행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요건>

구분	총원	사외이사수	기타요건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3인 이상의 이사	과반수 이상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3인 이상의 이사	2/3 이상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인 이상의 이사	과반수 이상	-

2023년 중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성명	상임/사외/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홍달	사외이사/비상임	위원장	2022.1.21.	2023.12.31.
박소라	사외이사/비상임	위 원	2022.1.21.	2023.12.31.

김자봉	사외이사/비상임	위 원	2022.8.12.	2025.7.31.

* 재선임일 기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성명	상임/사외/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홍달	사외이사/비상임	위원장	2022.1.21.	2023.12.31.
박소라	사외이사/비상임	위 원	2022.1.21.	2023.12.31.
김자봉	사외이사/비상임	위 원	2022.8.12.	2025.7.31.

* 재선임일 기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성명	상임/사외/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홍달	사외이사/비상임	위 원	2022.1.21.	2023.12.31.
박소라	사외이사/비상임	위원장	2022.1.21.	2023.12.31.
허상철	사내이사/상임	위 원	2022.1.21.	2023.12.31.
김자봉	사외이사/비상임	위 원	2022.8.12.	2025.7.31.

* 재선임일 기준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내규와 지배구조법 등 외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과 회사의 장기 비전과 성장방향, 건전/준법 경영 의지 등을 고려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KB금융지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한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있으며, 각 세부적인 절차는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지배구조내부규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정한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23년 중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1건이었으며 결의된 안건은 1건입니다. 또한 부의된 안건은 부의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년 중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1건이었으며 결의된 안건은 1건입니다. 부의된 1개의 안건은 부의안대로 전부 가결 되었습니다.

기존 김홍달, 박소라 감사위원의 임기가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어 2023년 12월 28일 제1차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서종군, 심동욱 감사위원후보를 추천하여 2023년 12월 29일 개최된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23년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3건이었으며 결의된 안건은 3건입니다. 부의된 3건의 안건은 부의안대로 전부 가결 되었습니다.

기존 김홍달, 박소라 사외이사의 임기가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어 2023년 12월 28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서종군, 심동욱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여 2023년 12월 29일 개최된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가) 2023년도 제1차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회의일 : 2023.12.28.(목) 15:10 ~ 15:20 (10분)
- 안건통지일 : 2023.12.21.(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김홍달	김자봉	박소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					
4. 의결안건						
1. 대표이사 후보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2023년도 제1차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 회의일 : 2023.12.28.(목) 15:00 ~ 15:10 (10분)
- 안건통지일 : 2023.12.21.(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김홍달	김자봉	박소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					
4. 의결안건						
1. 감사위원 서종군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감사위원 심동욱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가) 2023년도 제1차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회의일 : 2023.12.28.(목) 14:50 ~ 15:00 (10분)
- 안건통지일 : 2023.12.21.(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박소라	김홍달	김자봉	허상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					
4. 의결안건						
1. 사외이사후보군 관리내역(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사외이사 서종군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사외이사 심동욱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일정 종료 후 당해 연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 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을 35점(각 항목당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사록 등에 대한 관련 사외이사에 대한 설문지를 통해 평가됩니다. 위의 기준에 의해 평가한 2023년 각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 결과

항목	의사소통	전문성	소집절차	안건제공 수준	개최 시간	적시성	견제 기능	전체 평균
평균	4.7	5.0	5.0	4.7	4.7	5.0	4.7	4.8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 결과

항목	의사소통	전문성	소집절차	안건제공 수준	개최 시간	적시성	견제 기능	전체 평균
평균	4.7	5.0	5.0	4.7	4.7	5.0	4.7	4.8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 결과

항목	의사소통	전문성	소집절차	안건제공 수준	개최 시간	적시성	견제 기능	전체 평균
평균	4.7	5.0	5.0	4.7	4.7	5.0	4.7	4.8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서혜자

(2) 출생연도 : 1966년

(3) 출신학교 : 경명여고 / 경북대 법학과 학사

(4) 경력

前 KB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전무

前 KB국민은행 상인역지점 지역본부장

前 KB국민은행 인재개발부장

前 KB국민은행 시지 지점장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전원

(2) 후보자와의 관계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공식기구입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 이유

후보자 서혜자는 첫 여성 최고경영자로 국민은행 지역본부장과 지주 준법감시인을 거치는 등 영업과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스크와 수익을 고려한 내실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균형감각을 겸비하여 '소비자 신뢰 기반의 지속가능한 저축은행'으로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행전략을 보유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 경로

대표이사 후보자는 KB금융지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며, 2023년 12월 개최된 당사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 평가

후보자는 대표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당사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자격요건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

이어야 한다.

- 평가

서혜자 대표이사후보는 내·외규에서 정하는 대표이사 자격요건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은 물론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경력조회, KB국민은행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3) 본인 소명

본인은 과거 은행에서의 경험과 경영능력 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금융업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영업과 내부통제 등에 있어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서혜자 후보자에 대한 대표이사 추천을 위해 2023년 12월 28일 제1차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KB저축은행에 대한 후보자의 지식과 위기대응 능력, 내실경영 의지 등이 당사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혜자 후보자를 최고경영자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대표집행임원 후보 : 해당사항 없음

3) 감사위원 후보 : 서종군, 심동욱

가-1)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서종군

(2) 출생연도 : 1966년

(3) 출신학교 : (진주)대아고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 KDI국제정책대학원 석사

(4) 경력

2016.02~2022.03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 운용본부장(전무이사)

2015.01~2016.02 한국산업은행 간접투자실 사무국장
2010.10~2014.12 정책금융공사 창조금융실 팀장
2006.11~2010.0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행정사무관
1996.05~2006.10 금융투자협회 법규 및 상품팀 팀장
1993.03~1996.04 대한투자신탁 영업점, 기획부 대리

나-1)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전원
(2) 후보자와의 관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공식기구입니다.

가-2)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심동욱
(2) 출생연도 : 1959년
(3) 출신학교 : (전주)신흥고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KDI국제정책대학원 MBA
(4) 경력
2021.03~2022.03 포스코기술투자주식회사 자문역
2018.01~2021.03 포스코기술투자주식회사 대표이사
2015.02~2018.01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기획본부 전무
2009.10~2011.03 주식회사 포스코DX임원 (CEO 보좌역)
1986.01~2009.10 주식회사 포스코 재무실 자금그룹 리더

나-2)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전원
(2) 후보자와의 관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공식기구입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 이유
후보자 서종군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KDI정책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대한투자신탁, 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행정사무관, 한국정책금융공사 창조금융실 창조금융팀장,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장 등을 거쳐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을 역임하여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금융서비스에 대한 통찰력 등 저축은행 업무에 대한 식견과

이해도가 깊습니다. 현재 당사와 급여거래를 위한 요구불거래 등 거래규모가 미미하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재직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회사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심동욱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포스코에 입사해 경리, 국제금융, 자금, 금융IR, 주식 등 재무 파트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이후 포스코 그룹에서 3년간의 그룹의 재무, 전략, 기획 등을 총괄하였고 손꼽히는 재무 전문가로 평가받았으며 재무부분 전반적인 운영, 금융서비스에 대한 통찰력 등 저축은행 업무에 대한 식견과 이해도가 깊습니다. 현재 당사와 급여거래를 위한 요구불거래 등 거래규모가 미미하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재직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회사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 경로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군을 상시 관리 중이며 구성된 후보군 중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회사의 가치와 발전에 최선이 되는 자를 선별하여 2023년 12월 개최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금융회사 등과 관계

금융회사 등과 관계	
①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당사와 후보자는 급여 수령 목적의 요구불예금 거래 등 5억원 미만의 거래 관계가 있으며, 여신 거래는 해당사항 없음
②대주주와(KB금융지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 평가

서종군, 심동욱 후보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당사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자격요건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 는 사람

② 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규정 제8조(선임 및 구성)2항에 감사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 감사위원회규정 제8조 2항 및 시행령 제16조 1항]

※ 감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변호사, 회계사, 공인감사인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업계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평가

서종군, 심동욱 후보자는 내·외규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요건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은 물론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경력조회, 연구기관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후보자 서종군은 대한투자신탁, 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행정사무관, 정책금융공사 창조금융실 창조금융팀장,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장 등을 거쳐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을 역임하여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금융서비스에 대한 통찰력 등 저축은행 업무에 대한 식견과 이해도가 깊습니다. 경영전반의 통찰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심동욱은 포스코에 입사해 경리, 국제금융, 자금, 금융IR, 주식 등 재무 파트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이후 포스코 그룹에서 3년간의 그룹의 재무, 전략, 기획 등을 총괄하였고 손꼽히는 재무 전문가로 평가받았으며 재무부분 전반적인 운영, 금융서비스에 대한 통찰력 등 저축은행 업무에 대한 식견과 이해도가 깊습니다.

- (평가)
당사의 정관 제41조2항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후보자는 금융, 경제, 메커니즘디자인, 실험경제 등 저축은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실무 경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종군, 심동욱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을 검토해본 결과 후보자는 10년 이상 금융정책 연구기관 또는 포스코 재무그룹에서 근무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금융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서종군, 심동욱 후보자는 금융정책 부문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평가)
당사 정관 제41조2항에서는 후보자가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종군, 심동욱 후보자는 급여거래를 위한 요구불 예금거래 등 소액의 수신거래 외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으며 주주사인 KB금융지주와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고, 금융회사의 신용등급 또한 우수합니다. 후보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당사 정관 제41조에서는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종군, 심동욱 후보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임직원으로부터 존경받았으며, 평판이 우수하고 외부 Reference Check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 충실성
당사 정관 제41조에서는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종군, 심동욱 후보자는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의 참여 및 의안 사전 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서종군, 심동욱 후보자는 현재 KB저축은행과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거래가 없으며, 그 외에는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금융회사의 감사위원(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서종군, 심동욱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추천을 위해 2023년 12월 28일 제1차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사외이사 후보 : 서종군, 심동욱

가-1)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서종군

(2) 출생연도 : 1966년
(3) 출신학교 : (진주)대아고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 KDI국제정책대학원 석사
(4) 경력
2016.02~2022.03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 운용본부장(전무이사)
2015.01~2016.02 한국산업은행 간접투자실 사무국장
2010.10~2014.12 정책금융공사 창조금융실 팀장
2006.11~2010.0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행정사무관
1996.05~2006.10 금융투자협회 법규 및 상품팀 팀장
1993.03~1996.04 대한투자신탁 영업점, 기획부 대리

나-1)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전원
(2) 후보자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공식기구입니다.

가-2)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심동욱
(2) 출생연도 : 1959년
(3) 출신학교 : (전주)신흥고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KDI국제정책대학원 MBA
(4) 경력
2021.03~2022.03 포스코기술투자주식회사 자문역
2018.01~2021.03 포스코기술투자주식회사 대표이사
2015.02~2018.01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기획본부 전무
2009.10~2011.03 주식회사 포스코DX임원 (CEO 보좌역)
1986.01~2009.10 주식회사 포스코 재무실 자금그룹 리더

나-2)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전원
(2) 후보자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공식기구입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 이유

후보자 서종군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KDI정책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대한투자신탁, 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행정사무관, 한국정책금융공사 창조금융실 창조금융팀장,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장 등을 거쳐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을 역임하여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금융서비스에 대한 통찰력 등 저축은행 업무에 대한 식견과 이해도가 깊습니다. 현재 당사와 급여거래를 위한 요구불거래 등 거래규모가 미미하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재직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회사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심동욱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포스코에 입사해 경리, 국제금융, 자금, 금융IR, 주식 등 재무 파트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이후 포스코 그룹에서 3년간의 그룹의 재무, 전략, 기획 등을 총괄하였고 손꼽히는 재무 전문가로 평가받았으며 재무부분 전반적인 운영, 금융서비스에 대한 통찰력 등 저축은행 업무에 대한 식견과 이해도가 깊습니다. 현재 당사와 급여거래를 위한 요구불거래 등 거래규모가 미미하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재직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회사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 경로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군을 상시 관리 중이며 구성된 후보군 중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회사의 가치와 발전에 최선이 되는 자를 선별하여 2023년 12월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금융회사 등과 관계

금융회사 등과 관계	
①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당사와 후보자는 급여 수령 목적의 요구불예금 거래 등 5 억원 미만의 거래 관계가 있으며, 여신 거래는 해당사항 없음
②대주주와(KB 금융지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평가

서종군, 심동욱 후보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당사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자격요건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당사는 정관 제41조(사외이사의 선임 및 자격기준)2항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정관 제41조2항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사외이사는 본 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 평가

서종군, 심동욱 감사위원 후보는 내·외규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요건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은 물론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경력조회, 연구기관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후보자 서종군은 대한투자신탁, 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행정사무관, 한국정책금융공사 창조금융실 창조금융팀장,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장 등을 거쳐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을 역임하여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금융서비스에 대한 통찰력 등 저축은행 업무에 대한 식견과 이해도가 깊습니다. 경영전반의 통찰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심동욱은 포스코에 입사해 경리, 국제금융, 자금, 금융IR, 주식 등 재무 파트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이후 포스코 그룹에서 3년간의 그룹의 재무, 전략, 기획 등을 총괄하였고 손꼽히는 재무 전문가로 평가받았으며 재무부분 전반적인 운영, 금융서비스에 대한 통찰력 등 저축은행 업무에 대한 식견과 이해도가 깊습니다.

- (평가)

당사의 정관 제41조2항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후보자는 금융, 경제, 메커니즘디자인, 실험경제 등 저축은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실무 경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종군, 심동욱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을 검토해본 결과 후보자는 10년 이상 금융정책 연구기관 또는 포스코 재무그룹에서 근무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금융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서종군, 심동욱 후보자는 금융정책 부문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평가)

당사 정관 제41조2항에서는 후보자가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종군, 심동욱 후보자는 급여거래를 위한 요구불 예금거래 등 소액의 수신거래 외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으며 주주사인 KB금융지주와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고, 금융회사의 신용등급 또한 우수합니다. 후보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당사 정관 제41조에서는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종군, 심동욱 후보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임직원으로부터 존경받았으며, 평판이 우수하고 외부 Reference Check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 충실성

당사 정관 제41조에서는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종군, 심동욱 후보자는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의 참여 및 의안 사전 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4) 본인 소명

서종군, 심동욱 후보자는 현재 KB저축은행과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거래가 없으며, 그 외에는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금융회사의 감사위원(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라고 판단합니다.

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서종군, 심동욱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추천을 위해 2023년 12월 28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자격요건 검토보고서는 첨부된 별도의 임원선임 심사표로 대체합니다.

※ 별첨 참조 : 임원선임 심사표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사외이사 선임 시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당사는 경영/IT/Digital, 금융, 재무/회계, 법률 4개 전문분야로 나누어 관리 중으로, 후보군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원칙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후보를 주주의 추천 및 대학교수, 타 회사의 사외이사 경력자 정보 등을 활용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분야	후보군	구성
경영/IT/Digital	3명	대학교수, 변호사, 학회장 등 구성
금융	3명	금융사 임원, 금융관련협회, 대학교수 등 구성
재무/회계	3명	회계법인 등 구성
법률	2명	법무법인 등 구성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2023.12.28. 제4차 정기이사회 보고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 보고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2023.12.28.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안)

5)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 해당사항 없음

4. 사외이사 활동. 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 1절- 2-다) 이사회의 활동내역과 같음(생략)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절-3-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내역과 같음(생략)

다) 감사위원회

ㅇ 2023년 제1차 감사위원회

- 회의일 : 2023.1.31.(화) 14:30 ~ 14:40 (10분)
- 안건통지일 : 2023.1.26.(목)

항목	감사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요약	1. 2022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4. 의결안건					
1. 2022 년 하반기 감사 결과 보고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2022 년 4/4 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 제2차 감사위원회

- 회의일 : 2023.1.31.(화) 17:45 ~ 17:50 (5분)
- 안건통지일 : 2023.1.26.(목)

항목	감사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요약	1. 수시공시의 건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ㅇ 2023년 제3차 감사위원회

- 회의일 : 2023.2.9.(목) 16:00 ~ 16:30 (30분)
- 안건통지일 : 2023.2.2.(목)

항목	감사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요약	1. 수시공시의 건				
4. 의결안건					
2022 년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 제4차 감사위원회

- 회의일 : 2023.2.23.(수) 15:00 ~ 15:30 (30분)
- 안건통지일 : 2023.2.21.(월)

항목	감사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불참	참석		
3. 심의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요약	1. 외부감사인의 2022 년도 기말감사 결과보고 2. 2022 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ㅇ 2023년 제5차 감사위원회

- 회의일 : 2023.3.9.(목) 9:50 ~ 10:30 (40분)
- 안건통지일 : 2023.3.3.(금)

항목	감사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요약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의결안건					

1. 2023 년 제 1 차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제 12 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 제6차 감사위원회

- 회의일 : 2023.3.23.(목) 15:00 ~ 15:30 (30분)
- 안건통지일 : 2023.3.16.(목)

항목	감사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요약	1. 제 12 기 통일경영공시의 건 2. 수시공시의 건 3. 2022 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추가 공시의 건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ㅇ 2023년 제7차 감사위원회

- 회의일 : 2023.4.25.(월) 15:00 ~ 15:30 (30분)
- 안건통지일 : 2023.4.21.(금)

항목	감사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요약	1. 수시공시의 건				
4. 의결안건					
1. 감사위원회직무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2022 회계년도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 제8차 감사위원회

- 회의일 : 2023.5.23.(목) 16:00 ~ 16:40 (40분)
- 안건통지일 : 2023.5.18.(목)

항목	감사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요약	1. 제 13 기 1 분기 통일경영공시의 건				
4. 의결안건					
1. 2023 년 1 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 제9차 감사위원회

- 회의일 : 2023.7.6.(목) 14:30 ~ 15:00 (30분)
- 안건통지일 : 2023.7.3.(월)

항목	감사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요약	1. 수시공시의 건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ㅇ 2023년 제10차 감사위원회

- 회의일 : 2023.7.20.(목) 14:00 ~ 15:00 (60분)
- 안건통지일 : 2023.7.18.(월)

항목	감사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요약	1. 수시공시의 건 2. 2023 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3. 2023 년 상반기 내부감사 협의제도 결과보고				
4. 의결안건					
1. 2023 년 상반기 감사 결과 보고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2023 년 2 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결과 이사회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2023 년 6 월 매각채권 부실책임 심사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 제11차 감사위원회

- 회의일 : 2023.8.17.(목) 10:00 ~ 11:00 (60분)
- 안건통지일 : 2023.8.11.(금)

항목	감사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요약	1. 제 13 기 2 분기 통일경영공시의 건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ㅇ 2023년 제12차 감사위원회

- 회의일 : 2023.10.19.(목) 14:00 ~ 15:00 (60분)

- 안건통지일 : 2023.10.13.(수)

항목	감사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요약					
4. 의결안건					
1.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2023년 3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결과 이사회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2023년 9월 매각채권 부실책임 심사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 제13차 감사위원회

- 회의일 : 2023.11.27.(월) 15:30 ~ 16:00 (30분)
- 안건통지일 : 2023.11.23.(목)

항목	감사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요약	1. ㈜KB 저축은행 2023 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계획 2. 제 13 기 4 분기 통일경영공시의 건 3. 2023 년도 하반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ㅇ 2023년 제14차 감사위원회

- 회의일 : 2023.12.4.(월) 14:30 ~ 15:00 (30분)
- 안건통지일 : 2023.12.1.(수)

항목	감사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요약	-				
4. 의결안건					
1. 2023 년 4/4 분기 대손상각 대상채권 부실책임 심사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 제15차 감사위원회

- 회의일 : 2023.12.11.(월) 15:00 ~ 15:40 (40분)
- 안건통지일 : 2023.12.8.(금)

항목	감사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요약	-				
4. 의결안건					
1. 2023년 4/4분기 대손상각 대상채권 부실책임 심사 추가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 제16차 감사위원회

- 회의일 : 2023.12.28.(목) 15:20 ~ 16:00 (40분)
- 안건통지일 : 2023.12.23(금)

항목	감사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김홍달	박소라	정신동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요약	-				
4. 의결안건					
1. 2024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의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2023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감사계획(안)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자금세탁방지(AML)업무 감사 결과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ㅇ 2023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의일 : 2023.03.09.(목) 10:30 ~11:00(30분)
- 안건통지일 : 2023.2.28.(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성명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1. 2023년 1월 리스크모니터링 보고 2. 2022년 4분기 리스크관리협의회 주요활동내역			

	3. 2022년 4분기 여신심사위원회 주요활동내역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ㅇ 2023년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의일 : 2023.04.25.(화) 15:00~15:10(10분)
- 안건통지일 : 2023.04.20.(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성명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4. 의결안건				
1. 리스크관리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의일 : 2023.06.22.(목) 15:00~15:30(30분)
- 안건통지일 : 2023.06.16.(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성명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2. 참석여부	참석(화상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1. 2023년 4월 리스크모니터링 보고 2. 2023년 1분기 리스크관리협의회 주요활동내역 3. 2023년 1분기 여신심사위원회 주요활동내역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ㅇ 2023년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의일 : 2023.07.20.(목) 14:00~14:30(30분)
- 안건통지일 : 2023.07.17.(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성명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1. 2023년 5월 리스크모니터링 보고			
4. 의결안건				
1. 유동성 위기관리대책 2023년도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의일 : 2023.09.19.(화) 14:00~14:30(30분)
- 안건통지일 : 2023.09.15.(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성명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화상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1. 2023년 2분기 리스크관리협의회 주요활동내역 2. 2023년 2분기 여신심사위원회 주요활동내역			
4. 의결안건				
1.「대체투자」한도관련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의일 : 2023.10.19.(목) 13:20~14:00(40분)
- 안건통지일 : 2023.10.16.(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성명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2. 참석여부	참석(화상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1. 2023년 상반기 중앙회 표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2. CSS (개인신용평가모형) 모니터링 결과 보고			
4. 의결안건				
1. ML모형 자동 재학습 적용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의일 : 2023.12.04.(월) 15:00~15:30(30분)
- 안건통지일 : 2023.11.29.(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성명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2. 참석여부	참석(화상참석)	참석(화상참석)	참석(화상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1.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2. 2023년 10월 리스크 모니터링 보고 3. 2023년 3분기 리스크관리협의회 주요활동내역 4. 2023년 3분기 여신심사위원회 주요활동내역			
4. 의결안건				
1.「리스크관리규정」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ㅇ 2023년도 제8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의일 : 2023.12.28.(수) 14:00~15:00(60분)
- 안건통지일 : 2023.12.21.(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성명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1. 유동성 위기상황 분석 결과 및 비상계획 갱신결과			
4. 의결안건				
1. 2024년 리스크관리 정책 방향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2024년도 내부자본 및 Total Exposure, 내부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기업(법인)PD 변경(안) 및 조정계수(F/L효과반영) 적용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유동성위기관리대책 (Contingency Plan)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보상위원회

가) 2023년도 제1차 보상위원회

- 회의일 : 2023.2.22.(수) 15:30~16:00(30분)
- 안건통지일 : 2023.2.17.(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박소라	김홍달	김자봉			
2. 참석여부	참석	불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2022년 회사평가결과					
4. 의결안건						
1. 2022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찬성	-	찬성			가결

나) 2023년도 제2차 보상위원회

- 회의일 : 2023.3.9.(목) 9:50 ~ 10:00(10분)
- 안건통지일 : 2023.3.6.(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박소라	김홍달	김자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2023년 이사보수한도(안)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다) 2023년도 제3차 보상위원회

- 회의일 : 2023.3.15.(수) 14:00 ~ 14:20(20분)
- 안건통지일 : 2023.3.10.(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박소라	김홍달	김자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					
4. 의결안건						
1. 2023년 집행임원 평가기준 수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2022년 집행임원 평가결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3년도 제4차 보상위원회

- 회의일 : 2023.3.23.(목) 15:20 ~ 15:50(30분)
- 안건통지일 : 2023.3.20.(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박소라	김홍달	김자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					
4. 의결안건						
1. 경영진 보상체계(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경영진 변동성과급 규모 적정성 검토 및 보상체계 설계·운영 적정성 평가(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경영진 장·단기 성과급 지급(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이사보수규정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3년도 제5차 보상위원회

- 회의일 : 2023.12.19.(화) 15:30 ~ 15:50(20분)
- 안건통지일 : 2023.12.14.(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박소라	김홍달	김자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2024년 회사 성과평가 기준(안)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김홍달

(1) 활동내역

사외이사 김홍달은 2023년 중 개최된 이사회 17회 중 17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는 16회 중 16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8회 중 8회, 보상위원회는 5회 중 4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회 중 3회를 참석하여, 부의된 안건 모든 안건에 찬성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수익성도 감안하고, 조달

비용 절감방안을 고민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금융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련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2023년 중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등과 관련하여 총 31.3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김자봉

(1) 활동내역

사외이사 김자봉은 2023년 중 개최된 이사회 17회 중 16회에 참석하였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8회 중 8회, 보상위원회는 5회 중 4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회 중 3회를 참석하여 부의된 모든 안건에 찬성하였습니다.

kiwibank가 단순한 대출인입창구가 아닌 종합서비스채널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하였으며, 2027년 후의 KB저축은행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고,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안정성 관리에 대해 당부하였습니다. 2023년 중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등과 관련하여 총 21.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박소라

(1) 활동내역

사외이사 박소라는 2023년 중 개최된 이사회 17회 중 16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는 16회 중 15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8회 중 7회, 보상위원회는 5회 중 5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회 중 3회를 참석하여, 부의된 안건 모든 안건에 찬성하였습니다.

회사성과평가시 시장과 연동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을 당부하였고, 외국인대출의 수익성과 함께 연체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2023년 중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등과 관련하여 총 29.9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요약

구분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시간	비고
			감사		리스크		보상		임원후보추천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김홍달	17	17	16	16	8	8	5	4	3	3	31.3	
김자봉	17	16	-	-	8	8	5	5	3	3	21.5	
박소라	17	16	16	15	8	7	5	5	3	3	29.9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당사는 임원들의 부적절한 행위(Wrongful Act)에 의해 제기된 손해 배상 소송으로 임원들이 입은 재무적 손실 보상(손실보상 비용 포함)에 대하여 금융패키지보험 내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피보험 대상자는 이사회 구성원, 부사장 등 집행임원이며 고용관행배상책임을 특약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자기부담액은 없으며, 금융패키지 종합보험의 보험료는 229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김자봉	김홍달	박소라
1. 교육·연수 실시내역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과정명 : 자금세탁방지 실무(전자금융업) - 기간 : 2023.4.26. ~ 2023.7.18. (6h) - 교육기관 : 한국금융연수원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참석(수료)	참석(수료)	참석(수료)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과정명 : 금융회사 사외이사 프로그램 - 기간 : 2023.6.20. ~ 2023.7.18. (2h) - 교육기관 : 한국금융연수원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해당사항 없음	참석(수료)	해당사항 없음
다.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과정명 : 고객확인제도(CDD/EDD) 실무 - 기간 : 2023.11.17. ~ 2023.12.7. (6h) - 교육기관 : 한국금융연수원		
사외이사별 참석여부	참석(수료)	참석(수료)	참석(수료)
2. 누적 교육시간*	30	32	30

* 사외이사 취임 후 현재까지 합산한 교육·연수시간 (한국금융연수원 기준)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김홍달

가) 소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김홍달은 선임 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유

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김홍달은 당사 정관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지배구조법 6조	충족	선임시 자격 요건 유지
나. 당사 정관 41조	충족	선임시 자격 요건 유지
2.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전문성	충족	선임시 자격 요건 유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선임시 자격 요건 유지
다. 윤리책임성	충족	선임시 자격 요건 유지
라. 충실성	충족	선임시 자격 요건 유지

2) 사외이사 김자봉

가) 소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김자봉은 선임 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김자봉은 당사 정관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지배구조법 6조	충족	선임시 자격 요건 유지
나. 당사 정관 41조	충족	선임시 자격 요건 유지
2.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전문성	충족	선임시 자격 요건 유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선임시 자격 요건 유지
다. 윤리책임성	충족	선임시 자격 요건 유지
라. 충실성	충족	선임시 자격 요건 유지

3) 사외이사 박소라

가) 소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박소라는 선임 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박소라는 당사 정관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지배구조법 6조	충족	선임시 자격 요건 유지
나. 당사 정관 41조	충족	선임시 자격 요건 유지
2.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전문성	충족	선임시 자격 요건 유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선임시 자격 요건 유지

	다. 윤리책임성	충족	선임시 자격 요건 유지
	라. 충실성	충족	선임시 자격 요건 유지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KB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외이사 평가를 반영하여, 임기만료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 평가 주체 :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1월에 사외이사 본인에 대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이사회 관련 부서 직원에 의한 평가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② 평가 기준 : 평가항목은 사외이사별로 전문성(전문성과 경험), 직무공정성(전략에 대한 이해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이해도, 주주및 가치 제고 노력), 윤리책임성(윤리경영노력), 충실성(참여도, 안건에 대한 사전 준비,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외이사 개개인에 대한 종합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여 정성적인 평가요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③ 평가 절차 : 각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평가, 동료평가, 직원평가로 평가방법을 세분화하여 다면적으로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2023년도 사외이사 평가는 2023년 12월에 진행되었습니다. 평가결과 전체 사외이사가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방안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김홍달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
김자봉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
박소라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

3) 외부평가

가) 외부평가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위해 별도의 외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해당사항 없음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는 김홍달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당사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 지원조직은 전략기획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 등과 관련된 평가 등은 인사총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각 감사부(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부(리스크관리위원회), 인사총무부(보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는 회의일정 조정, 안건의 정리 및 통지 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김홍달

가) 재직기간 : 2021년 1월 ~ 2023년 12월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급	42,000,000원	연간지급금액
	상여금	해당 없음	
	기타 수당	100,000원	임직원 복지성 지급금액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여비교통비	月30만원 내외	참석 時 지급
	건강검진 지원	연 1회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
	차량제공	해당 없음	
	사무실제공	해당 없음	
	기타 편익제공	해당 없음	

2) 사외이사 김자봉

가) 재직기간 : 2022년 8월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급	42,000,000원	연간지급금액
	상여금	해당 없음	
	기타 수당	100,000원	임직원 복지성 지급금액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여비교통비	月30만원 내외	참석 時 지급
	건강검진 지원	연 1회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
	차량제공	해당 없음	

	사무실제공	해당 없음	
	기타 편익제공	해당 없음	

3) 사외이사 박소라

가) 재직기간 : 2021년 1월 ~ 2023년 12월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급	42,000,000원	연간지급금액
	상여금	해당 없음	
	기타 수당	100,000원	임직원 복지성 지급금액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여비교통비	月30만원 내외	참석 時 지급
	건강검진 지원	연 1회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
	차량제공	해당 없음	
	사무실제공	해당 없음	
	기타 편익제공	해당 없음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당사의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 체결한 계약이 없습니다.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2024년 2월말 기준)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만료일	담당위원회	직위	경력
윤승용	2018.1.1.	2020.12.31.	이사회,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국방홍보원장 아시아경제신문 논설고문 전북대 초빙교수
황석환	2018.1.1.	2020.12.31.	이사회,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보상위원회위원장	KB국민은행 강남지역본부장 KB국민은행 수원지역본부장

임병철	2019.1.1	2019.12.31. (2019.7.31. 중도사임)	이사회,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신한금융지주미래전략연구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임형석	2019.8.1.	2022.7.31.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회의 위원
김홍달	2021.1.1.	2023.12.31.	이사회,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장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우리금융지주회사 전무 OK저축은행 수석부사장 모네타자산운용㈜ 대표 건설공제조합 금융사업단장
박소라	2021.1.1.	2023.12.31.	이사회,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보상위원회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김자봉	2022.8.1.	2025.7.31.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서종군	2024.1.1.	2026.12.31.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국산업은행 간접투자실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행정사무관
심동욱	2024.1.1.	2026.12.31.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회위원장	포스코기술투자 대표이사 포크소에너지 기획지원본부장 상무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10월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경영승계 절차,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최고경영자의 자격, 후보추천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첨부 9] 지배구조내부규범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1조 의하면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저축은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쉽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활한 최고경영자 승계를 통한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2023년 12월 28일 제1차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 후보는 KB금융지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이사 후보에 대해서 임원선임 심사표에 정해진 기준 등에 따라 후보로 선정하여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절차는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최고경영자의 사임, 해임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제7조 및 8조의 임원 자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이사회가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계절차가 개시되며, 승계절차가 개시되면 이사회는 지체 없이 선임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합니다. 최고경영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지체 없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8조에서 정하는 경영승계 절차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 평가

서혜자 대표이사후보는 내·외규에서 정하는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합니다.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물론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경력조회, KB국민지주, KB국민은행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자격요건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평가

서혜자 대표이사후보는 내·외규에서 정하는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합니다.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물론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경력조회, KB국민지주, KB국민은행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1조에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저축은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쉽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평가

2023년 12월 28일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된 서혜자 후보자는 KB국민은행에서 송현동지

점장 등의 직무를 거치면서 영업현장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였고 2017년부터 KB국민은행 인재개발부장 대구 경북2(상인역) 지역본부장을 거쳐 KB국융지주 준법감시인 전무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룹내 내부통제 관련 경력을 쌓았습니다. 경북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는 등 금융 및 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서혜자 후보자는 이론 및 실무의 종합적 역량을 함양하였습니다.

또한 KB금융그룹의 비전과 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무를 통한 경험과 폭넓은 금융지식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속에서 저축은행의 역할과 변화 혁신에 대한 최적의 Insight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서혜자 후보자는 경영진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회사 내외부에서 탁월한 리더십, 비전제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러한 서혜자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령 및 내·외규상의 징계여부 등과 건강상태 등을 검증하고 2023년 12월 28일 최고경영자 후보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 선정을 위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최고경영자 후보에 대하여 검증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허상철 대표이사의 임기가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23년 12월 28일 제1차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서혜자 후보자를 대표이사후보로 선정하였으며, 2023년 12월 29일 개최된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경영승계절차 운영현황>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23.12.14.	대표이사 후보 선정 통지	KB금융지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23.12.28.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서혜자 후보자 추천
2023.12.29.	주주총회 소집 및 대표이사 선임안건 상정	제13차 임시이사회
2023.12.29.	대표이사 선임	제1차 임시주주총회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해당사항 없음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해당사항 없음

3) 후보군 현황

해당사항 없음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해당사항 없음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인사총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인사총무부
- 직원수 : 총 7명(담당자 2명)
- 담당자 : 총괄-인사총무부 부장 함미애 (02-2146-8334)
  담당-인사총무부 대리 이용승 (02-2146-8489)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KB저축은행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 뿐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
1. 변호사, 회계사, 공인감사인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업계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상기 각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1)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여 이사회 및 해당 위원회에 상근감사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부의되는 안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적법성을 심의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상근감사위원은 17회의 이사회 안건, 16회의 감사위원회 안건 모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쳤습니다.

(2)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412, 지배구조법§20④)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402)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외감법§10)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2년 제16차(2022.12.28.) 감사위원회에서 회사가 외부감사인

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다) 상근감사위원 관련 사항

상근감사위원은 2023년 중 내부통제점검결과 보고 4회, 내부회계검토결과 보고 1회, 외부감사인의 활동내역 평가보고 1회, 내부감사결과 보고 2회 등 내부 감사활동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상근감사위원은 외부감사인과 매분기 회계감사 착수 전 감사일정과 감사범위, 취약부문에 대한 감사요구 등의 내용으로 사전 협의를 진행하며 감사종료 후 취약부문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실무부서인 회계부 등에 그 내용을 수정 보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점검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3년 1월에 개최된 제1차 감사위원회, 2023년 5월 개최된 제8차 감사위원회, 2023년 7월에 개최된 제10차 감사위원회, 2023년 10월에 개최된 제12차 감사위원회에서 총 4회에 걸쳐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결과를 결의 하였으며, 2023년 3월에 개최된 제5차 감사위원회에서 대표이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였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 중 사외이사가 2/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요건으로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

1. 변호사, 회계사, 공인감사인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업계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

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상기 각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2023년 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모두 3명의 이사(상근감사위원, 사외이사2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감사위원인 정신동(상근감사위원), 김홍달(사외이사), 박소라(사외이사)는 위의 자격요건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 2023년 말 김홍달 감사위원과 박소라 감사위원이 임기만료(2023.12.31)로 퇴임하였습니다.

2) 구성원

- 2023년 12월말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정신동	상임	상근감사위원	2021.4.6.	2024.4.5.
김홍달	사외	위원장	2021.1.1.	2023.12.31.
박소라	사외	위원	2021.1.1.	2023.12.31.

- 2024년 2월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정신동	상임	상근감사위원	2021.4.6.	2024.4.5.
심동욱	사외(신규선임)	위원장	2024.1.1.	2026.12.31.
서종군	사외(신규선임)	위원	2024.1.1.	2026.12.31.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 중 당사 감사위원회는 16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감사위원회 활동내역 참조)

2) 회의 개최내역

※ 사외이사의 활동·보수 등에서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참조

3) 평가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말 당해 연도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 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을 총점 35점(각 항목당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2023년 감사위원회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평가 결과

항목	의사소통	전문성	소집절차	안건제공 수준	개최 시간	적시성	견제 기능	전체 평균
평균	5.0	5.0	5.0	5.0	5.0	5.0	5.0	5.0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 보조조직인 감사부는 총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내용을 상근감사위원 보고를 거쳐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심의·결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KB저축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 및 정책을 수립,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구체적 역할

KB저축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 및 정책을 수립,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3조(기능)에서 그 구체적인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전사 리스크관리 전략수립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리스크관리위원회 규

정 제3조 2항 1호)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설정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2항 2호)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승인합니다.(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2항 3호)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리스크관리협의회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2항 9호, 10호)

마) 기타

기타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각종 리스크 한도의 설정 및 한도 초과의 승인
- Total Exposure 한도설정 및 배분
- 신용평가시스템의 적용 및 모델의 중요한 변경 및 개선
- 내부자본기준 리스크 한도설정 및 배분
- 리스크 측정방법론 및 요소의 중요한 변경 및 개선
- 리스크관리 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 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 기타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 중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외이사 수가 위원 총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 2023년 12월말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자봉	사외	위원장	2022.8.12.	2025.7.31.
김홍달	사외	위원	2022.1.26.	2023.12.31.
박소라	사외	위원	2022.1.26.	2023.12.31.

- 2024년 2월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자봉	사외	위원장	2022.8.12.	2025.7.31.
심동욱	사외(신규선임)	위원	2024.1.31.	2026.12.31.
서종군	사외(신규선임)	위원	2024.1.31.	2026.12.31.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 중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 8회 개최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사외이사의 활동·보수 등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내역 참조

3) 평가

당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말 당해 연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 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을 총점 35점(각 항목당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위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 2023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 결과

항목	의사소통	전문성	소집절차	안건제공 수준	개최 시간	적시성	견제 기능	전체 평균
평균	5.0	5.0	5.0	5.0	4.7	4.7	4.7	4.9

8. 보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KB저축은행의 보상위원회는 회사의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보상체계의 설계와 운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구체적 역할

KB저축은행의 보상위원회는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승인합니다. 또한 대상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대상자의 보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 구성(보상위원회)

1) 총괄

KB저축은행의 보상위원회는 이사 중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 수가 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2023 년 12 월말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박소라	사외	위원장	2022.1.26.	2023.12.31.
김홍달	사외	위원	2022.1.26.	2023.12.31.
김자봉	사외	위원	2022.8.12.	2025.7.31.

-2024 년 2 월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심동욱	사외(신규선임)	위원장	2024.1.31.	2026.12.31.
김자봉	사외	위원	2022.8.12.	2025.7.31.
서종군	사외(신규선임)	위원	2024.1.31.	2026.12.31.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 중 보상위원회는 총 5회 개최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사외이사의 활동·보수 등에서 보상위원회 개최내역 참조

3) 평가

당사는 보상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말 당해 연도 보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보상위원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 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을 총점 35점(각 항목당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2023년 보상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상위원회 평가 결과

항목	의사소통	전문성	소집절차	안건제공 수준	개최 시간	적시성	견제 기능	전체 평균
평균	5.0	5.0	5.0	4.7	4.7	5.0	4.7	4.9

9.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KB저축은행은 2024년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 처분 내용을 공시하였으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0.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상위원회

가. 총괄

당사는 보상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이사회내소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상정책을 상기 원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상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당사 『이사회규정』 제12조 제1항을 그 근거로 하여 2016년 8월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보상위원회규정』 제7조에 의거 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상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상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총3인의 위원(박소라 사외이사, 김홍달 사외이사, 김자봉 사외이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인의 위원은 사외이사이고 박소라 사외이사가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보상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박소라 사외이사는 회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재무 전문가이며, 김홍달 사외이사는 금융 및 재무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전문가이며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보상위원회 3인의 위원 중 임형석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교체됨에 따라 2022년 8월 신규로 김자봉 사외이사를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김자봉 사외이사는 경제학 및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 보수 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이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말로 보상위원회 3인의 위원 중 2인(박소라 사외이사, 김홍달 사외이사)이 임기만료로 교체됨에 따라 2024년 1월 신규로 2인(서종군 사외이사, 심동욱 사외이사)을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심동욱 사외이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말 현재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박소라	사외이사	사외이사/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	-	이화여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김홍달	사외이사	사외이사/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	여	루다자산운용(주) 운용총괄이사 건설공제조합 금융사업단장
김자봉	사외이사	사외이사/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	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

- 2024년 1월말 현재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심동욱	사외이사	사외이사/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	여	포스코기술투자 대표이사 포스코에너지 기획지원본부장 전무
김자봉	사외이사	사외이사/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	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
서종군	사외이사	사외이사/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	여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 전무이사 한국산업은행 간접투자실 사무국장

2) 구성원

- 2023년 12월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박소라	사외	위원장	2021.1.1.	2023.12.31.
김홍달	사외	사외이사	2021.1.1.	2023.12.31.
김자봉	사외	사외이사	2022.8.1.	2025.7.31.

- 2024년 1월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심동욱	사외	위원장	2024.1.1.	2026.12.31.
김자봉	사외	사외이사	2022.8.1.	2025.7.31.
서종군	사외	사외이사	2024.1.1.	2026.12.31.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상위원회규정』에 의거 하여 당사 보상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에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위원회는 2023년 3월 23일 개최된 2023년 제4차 보상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구조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위원회는 2024년 2월 22일 개최된 2024년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 2023년도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위원회는 2023년 3월 23일 개최된 2023년 제4차 보상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경영진 변동성과급 규모 적정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보상체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구조, 변동보상의 지급방법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위원회는 2023년 3월 23일에 개최된 2023년 제4차 보상위원회에서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소집방법, 결의방법, 주요현황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절차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 절차는 아래 보상위원회의 의사결정 절차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 보상위원회는 2023년 3월 23일에 개최된 2023년 제4차 보상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 경영진의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와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급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급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보수체계 재조정 등 보수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

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보상위원회는 2024년 2월 22일 개최된 2024년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상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① 국내 : 당사 본·지점 전체 적용
② 해외 : 해당사항 없음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상위원회규정』 제4조에 보상위원회에서 지배구조법에서 정의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3년 제4차 보상위원회에서 변동보상의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일 이후로 신규 선임된 경영진(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부사장, 전무, 상무)을 범주로 결정하였고,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없어 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의 단기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보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수 있는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범주에 따라 2023년 12월말 기준 임원은 대표이사 1명, 상근감사위원 1명, 부사장 1명, 전무 1명, 상무 2명 등 총 6명이며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및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6	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부사장, 전무, 상무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0	-

10)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라. 보상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상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3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경우 행사 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재적 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023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당사 보상위원회는 2023년도에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경영진 보수에 관한 사항,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경영진 변동성과급 규모 적정성 및 보상체계 설계. 운영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회사 및 경영진 성과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2023년도 제1차 보상위원회

- 회의일 : 2023.2.22.(수) 15:30~16:00(30분)

- 안건통지일 : 2023.2.17.(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박소라	김홍달	김자봉			
2. 참석여부	참석	불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2022년 회사평가결과					
4. 의결안건						
1. 2022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찬성	-	찬성			가결

나) 2023년도 제2차 보상위원회

- 회의일 : 2023.3.9.(목) 9:50 ~ 10:00(10분)
- 안건통지일 : 2023.3.6.(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박소라	김홍달	김자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2023년 이사보수한도(안)					

다) 2023년도 제3차 보상위원회

- 회의일 : 2023.3.15.(수) 14:00 ~ 14:20(20분)
- 안건통지일 : 2023.3.10.(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박소라	김홍달	김자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					
4. 의결안건						
1. 2023년 집행임원 평가기준 수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2022년 집행임원 평가결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3년도 제4차 보상위원회

- 회의일 : 2023.3.23.(목) 15:20 ~ 15:50(30분)
- 안건통지일 : 2023.3.20.(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박소라	김홍달	김자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					
4. 의결안건						
1. 경영진 보상체계(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경영진 변동성과급 규모 적정성 검토 및 보상체계 설계·운영 적정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평가(안)						
3. 경영진 장·단기 성과급 지급(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이사보수규정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3년도 제5차 보상위원회

- 회의일 : 2023.12.19.(화) 15:30 ~ 15:50(20분)
- 안건통지일 : 2023.12.14.(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박소라	김홍달	김자봉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요약	2024년 회사 성과평가 기준(안)					

4) 평가

당사는 보상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상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보상위원회의 구성. 운영 실태를 평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보상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적시성 등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 및 서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당사는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강화 및 경영전략을 고려하여 2024년도에는

건실한 건전성 기조 아래 ①자산포트폴리오 조정 및 비대면(kiwibank) 영업전략 재정립, 핵심Biz 수익 확대, ②ALM 역량제고를 통한 조달비용 감축, ③고위험자산 입구전략 강화 및 부실자산축소를 달성하기 위한 KPI를 설계하였으며, 성과관리 방향 및 기준에 따라 본부조직과 영업채널의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표로는 ROE, 총영업이익, 실질NPL비율, 비대면고객 순증 등의 정량지표와 수익 확대, 사업분야별 역량강화, 잠재위험 관리 등의 정성지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임원의 경우 담당조직별로 회사성과 연계, 담당조직의 핵심성과, 내부통제 등을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설정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현재 해당인원이 없어 별도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임원의 경우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를 활용하며, 개인 성과측정 지표로서 해당 임원의 개별 KPI 및 정성지표의 경영과제 달성도 등을 통해 이를 개인별 성과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현재 해당인원이 없어 별도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장·단기 성과급 지급금액 중 40%~6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제한주식으로 3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장·단기 성과급 중 이연된 보수액은 3년에 걸쳐 이연지급을 하며, 이연지급시에도 경영성과가 반영된 주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임원의 경우 개인 성과 달성률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 부여수량이 조정되며, 임원별 장·단기 성과급 계약 세부내용에 따라 평가지표, 지급율 등을 달리하여 달성도를 측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장·단기성과급(이연하여 지급할 제한주식 포함)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장·단기 성과급 결정시 이연보수 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지급 확정되며, 이를 3년에 걸쳐 이연지급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 기준시점의 공정시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경영진의 전체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성과평가에 기초한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장·단기 성과급으로 분류하여 Pay Mix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수액 중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강도, 해당 업무의 투자성을 고려하여 기본급, 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Pay Mix(기본급 : 단기성과급 : 장기성과급)는 1 : 1 : 0.7 이고, 집행임원인 부사장은 1 : 1 : 0.5, 집행임원인 전무는 1 : 1 : 0.4, 집행임원인 상무는 1 : 1 : 0.4, 상근감사위원은 1 : 1.2 : -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급의 지급형태는 임원의 선택에 따라 40%~60%는 현금으로 일시지급하고, 일시지급되지 않는 나머지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으로 전환하여 3년간 이연지급 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급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고, 평가 기간 및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40%~6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3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의 경우 성과급 중 40%~6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으로 3년간 이연지급하되, 이연지급되는 비율 및 이연지급 시기는 본인이 선택하며 3년간 이연지급합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성과연봉제에 기초하여 직원의 연봉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사성과·부점성과, 개인평가 결과, 특별한 경영성과 또는 개인별 특별한 근무성과 격려 등의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 직원의 연봉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연봉에는 기본급과 직무급이 있고, 직무급은 직무분석을 통한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보상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소정의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2023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 임원의 경우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내부규정은 없으나,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경영진의 경우 개인적 위험회피전략을 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검하였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당사의 보수체계는 전년도 체계를 유지하였으며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주1)	법인세차감전 순이익(B)주2)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A/B)		
전년도 (2022년)	144	286	50.3	249	0.58
당해년도 (2023년)	135	173	78.0	225	0.60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23년부터 변경된 제출 비과세 제외)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임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원		직원						
		등기 임원	비등기 임원	G6	G5	G4	G3	G2	G1	기타
전년도 (2022년 249명)	보수총액	11.8	9.6	15.4	18.3	28.6	16.1	15.9	17.9	10.3
	성과보수액	5.7	4.6	2.6	2.9	4.9	2.3	2.4	2.1	0.2
당해년도 (2023년 225 명)	보수총액	12.1	12.3	11.3	16.5	27.6	13.1	15.4	15.0	11.8
	성과보수액	5.6	6.0	1.6	2.5	4.7	2.1	2.2	2.0	0.1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및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주1)	기본급주2)	성과보수액주2)	
					이연지급대상
전년도 (2022년)	임원	8	10.1	9.8	6.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당해년도 (2023 년)	임원	9	12.7	11.9	6.9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주1)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주1)	주식연계 상품주2)	기타주3)
전년도 (2022년)	임원	9.8	3.8	6.0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
당해년도 (2023 년)	임원	11.9	5.0	6.9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

주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등)으로 평

가하여 산정한다.

주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1)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주1)		
			지급확정주2)	지급미확정주2)
전년도주3) (2022년)	임원	17.9	5.6	1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당해년도 (2023 년)	임원	19.6	6.8	12.9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주1) 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주3) 2023년 발생 성과보수액을 익년도 1/4분기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수액을 2023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 상품	기타
전년도 (2022년)	임원	17.9	-	17.9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

당해년도 (2023 년)	임원	19.6	-	19.6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22년)	임원	17.9	3.9	4.9	4.1	3.1	1.9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	-
당해년도 (2023 년)	임원	19.6	5.1	5.3	3.7	2.6	2.9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23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23년(t기) 발생분, 2022(t-1기) 발생분, 2021(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주4]
		축소액[주1]	직접적조정[주2]	간접적조정[주3]	
전년도 (2022년)	임원	-	-	-	1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당해년도 (2023 년)	임원	-	-	-	12.9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2)	임원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당해년도 (2023)	임원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첨부 1]

정 관

2011. 12. 30 제정 2012. 1. 13 개정 2012. 9. 27 개정 2013. 9. 30 개정 2015. 5. 29 개정
2016. 8. 1 개정 2016. 9. 27 개정 2019. 4. 1 개정 2020.8.1 개정 2020.12.31 개정
2021.03.25 개정 **2022.07.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이 회사는 주식회사 KB 저축은행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KB Savings Bank Co., Ltd. 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용계업무
2. 신용부금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4. 자금의 대출업무
5. 어음의 할인업무
6. 내·외국환업무 및 금융결제원업무
7. 보호예수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10.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
12. 부동산임대업무
13.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4.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15.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
18.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보증
19. 제1호 부터 제18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제 3 조(영업구역) 이 회사의 영업구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로 한다.
제 4 조(사무소) ① 이 회사의 주된 사무소(본사)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5 조(공고의 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재해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서울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제 6 조(업무방법서) ① 이 회사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한 표준업무방법서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한다.
② 회사가 업무의 종류 및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표준업무방법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자본금과 주식

제 7 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9,600,000주로 한다.
제 8 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 9 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 10 조(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400,000주로 한다.
제 11 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 12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주식 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 또는 이사가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15 조(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금지) 이 회사의 주주는 주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 16 조(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7 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3.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4. 각 주식의 취득 년 월 일

제 18 조(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한다.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5.5.29>
제 19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개정 2015.5.29>
② 이 회사의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질권의 등록) ① 회사 주식을 목적으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는 회사의 주주명부 및 주권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이미 설정된 질권이나 신탁재산의 표시의 말소 또는 전질이나 질권이동의 등록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 21 조(권리자의 신고) ① 주주,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공증에 의한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④ 법정대리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2 조(주권의 오손 및 상실과 재교부) ① 주권을 오손하였을 때에는 회사에 구주권을 제출하고 신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첨부한 주권의 진위를 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손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 상세한 설명 또는 확실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3조(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③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채를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를 전자등록한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 24 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3. 대표이사 및 임원의 임면
4. 자본의 감소
5.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합병
6. 결산 및 회사의 재산상 중요한 사항
7.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3. 9. 30>
10.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 25 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6 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7 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8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9 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0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1 조(주주의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 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 32 조(의결권 제한) ①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출석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이상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4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5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 36 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7 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제 38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 · 이사회

제 39 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② 이사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③ 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회사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29]

제 40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1 조(사외이사의 선임 및 자격기준) ①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회사가 최초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사외이사는 본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최근 10년내에 5년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 42 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정한다.

④ 이 회사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일 이후 선임하는 사외이사 중 1인 이상은 감독당국으로부터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 43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신설 2013.9.30><삭제 2016.9.27>

④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⑤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의한 임기연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이 회사의 자회사, 모회사인 KB금융지주사 및 KB금융지주의 자회사 등의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당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을 때 편입된 자회사 등의 사외이사는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3.9.30>

제 44 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9조에 정하는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9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미달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45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② 이 회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46 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당 직무의 이사가 없을 경우 직무대행 순서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제 47 조(이사회의 권한) ① 이 회사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주주총회 관련 사항】

1.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2.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3.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

【일반경영 관련 사항】

4.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경영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경영계획의 승인
6. 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중요한 계약 및 소송, 중요한 차입,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 고정자산 매입 또는 투자유가증권 매입 등
8. <삭제 2013.9.30>
9.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신사업진출 및 사업철수

【조직 및 임원 관련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13.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주요 규정·기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
14. 대주주·임원 등과 금융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15. 상법 제397조 내지 제398조에 의한 이사의 경업거래, 겸직, 회사의 사업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승인 및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
16.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개정 2016. 8.01>
17.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 및 기타 보상의 결정(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보수에 해당사항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8. 이사보수규정, 집행임원운영규정에서 정한 경영진성과급 환수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당사자에게 부여된 성과급(지급미확정분, 기지급분 및 미지급분)의 환수범위 등 결정
19.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0.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이사회 의장의 선임
2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자본조달 및 자본금 관련 사항】

22. 발행가격과 전환가격을 포함한 주식 및 채권 발행의 결정
23. 자본금의 변경, 제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주식의 발행 또는 소각에 관한 사항
24. 자산 재평가

【기타 사항】

2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26.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7.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28. 본점의 이전, 지점(출장소) 설치, 이전 및 폐지(단,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개정 2016. 8.01>
29.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30. 자회사의 설립(인수) 및 매각
31. 주주총회 위임사항
32.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신설 2016. 8.01>
33. 리스크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4. 관계법령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35. 이사회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36. 기타 이사회가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종합적인 경영분석보고
2.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의 결과
3.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4.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8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④ 이사회 소집통지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의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안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

⑥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5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49 조(이사회의 결의 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결의요건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 준법감시인의 해임, 위험관리책임자의 해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들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9. 30>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다.

제 50 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1 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 등 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6. 보상위원회

② 제1항 각호의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1항 제4호의 위원회(“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KB금융지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이사 후보를 심사하여 추천한다

⑤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2 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법령,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 53 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제 54 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5 조(주주의 유지청구권 및 대표소송) ① 이사가 법령,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 56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감사위원회

제 57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개정 2013. 9. 30><개정 2016. 8.01>

③ 감사위원회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상근 감사위원”이라 칭한다)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0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8.01>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 58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⑨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⑩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⑪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⑫ 제52조, 제53조, 제55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59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 계

제 60 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매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5. 29>

제 61 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승인, 공고)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상법 제447조의4 제2항의 사항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62 조(이익금의 처리) ① 회사는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 63 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적립금의 합계금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법정적립금액의 액
4.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②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64 조(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제63조 제1항 각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해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의 적립된 법정적립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65 조(회계규정) 이 회사의 회계처리는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회가 제정하는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 66 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67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7 장 보 칙

제 68 조(상법의 적용) 이 정관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69 조(정관의 변경)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한 표준정관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3)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상호저축은행업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9.27)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9.30)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5.29)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01)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27)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4.1)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1)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31)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25)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7.29)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2]

이사회규정

2012.1.12. 제정 2012.8.16. 개정 2013.9.30. 개정 2015.2.26. 개정 2015.3.25. 개정 2015.5.29. 개정

2016.8.01. 개정 2016.10.31. 개정 2016.12.22. 개정 2017.3.21. 개정 2017.6.29. 개정 2018.12.6. 개정

2021.9.10. 개정 2022.7.19. 개정 2023.1.2. 개정 2023.1.31. 개정 2023.4.27. 개정 2024.1.8.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이사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등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룹"이라 함은 "KB금융지주"(이하 "지주회사"라 한다)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이하 "계열사"라 한다)으로 구성된 회사들의 집합체를 말하며, "그룹사"라 함은 그룹내 각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3.25.]

제 3 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이사의 권한 및 의무)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는「상법」등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외이사는 취임시 회사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의1(경영진의 협력 의무) ① 회사의 경영진은 [별표1]의 사항에 대한 지주회사의 점검 및 필요한 자료제출 제공 요구에 적극 협력한다.

②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사외이사에게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 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5.]

제 5 조(이사의 자격 검증) 이사회는 이사 후보에 대하여 법령에 정하여진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한다. 단, 사외이사의 경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한다.

제 6 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하며,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③ 의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다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그 순위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7.>

⑤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4.27.>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 7 조(대표이사 사장)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1인을 선임한다.

② 사장 유고시에는「직제 및 업무분장규정」에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내 제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내 제위원회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이 이사회소집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이사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0 조(회의) ① 이사회의 성립 및 의사의 결정은 회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2015.3.25.>

② <삭제 2015.5.29.>

제 11 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제출할 사항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주주총회 관련 사항】

1.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2.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3.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

【일반경영 관련 사항】

4.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01.>

5. 경영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경영계획의 승인 <개정 2016.8.01.>

6. 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중요한 계약 및 소송, 중요한 차입,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 고정자산 매입 등 <개정 2022.7.19.>

   가.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계약(자산의 처분계약은 직전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대출채권 매각거래 및 대체투자는 제외하되, 대체투자의 경우 자기자본 100분의 5이상 또는 해외 대체투자 및 관계회사(대주주 포함)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자는 부의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6.29><개정 2022.7.19.>

   나.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다만,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에 의한 출자전환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2.>

   다. 건당 소가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소의 제기 포기 및 응소포기. 단, 집행권원 획득을 위한 여신성 소송의 경우는 제외.

8. <삭제 2013.9.30.>

9.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신사업진출 및 사업철수 <신설 2016.8.01.>

【조직 및 임원 관련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13. [별표2]에서 정하는 주요 규정·기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 다만, 법령 및 기타 외규 또는 내규의 변동으로 인한 본호 및 본항 제9호의 변경이나 자구수정은 제외한다.

14. 대주주·임원 등과 금융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15. 상법 제397조 내지 제398조에 의한 이사의 경업거래, 겸직, 회사의 사업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승인 및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

16. 이사회내 위원회위원 선임 및 해임.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신설 2016.8.01.>

17.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 및 기타 보상의 결정(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보수에 해당사항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신설 2016.8.01.>

18. 이사보수규정, 집행임원운영규정에서 정한 경영진성과급 환수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당사자에게 부여된 성과급(지급미확정분, 기지급분 및 미지급분)의 환수범위 등 결정<신설 2017.03.21>

19.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6.8.01.>

20.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이사회 의장의 선임 <신설 2016.8.01.>

2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신설 2016.8.01.>

【자본조달 및 자본금 관련 사항】

22. 발행가격과 전환가격을 포함한 주식 및 채권 발행의 결정

23. 자본금의 변경, 제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주식의 발행 또는 소각에 관한 사항

24. 자산 재평가

【기타 사항】

2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26.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7.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10>

28.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의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 <신설 2021.9.10>

29.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30. 본점의 이전, 지점(출장소) 설치, 이전 및 폐지(단,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개정 2016.8.01.>

31.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32. 자회사의 설립(인수) 및 매각

33. 주주총회 위임사항

34.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8.01.>

35. 리스크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6.8.01.>

36. 관계법령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신설 2016.8.01.>

37. 이사회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6.8.01.>

38. 기타 이사회가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8.01.>

[전문개정 2015.5.29.]

③ 회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지주회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가 [별표1]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5.5.29.><개정 2016.8.01.><개정 2016.10.31.>

④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지주회사의 그룹 경영관리위원회가 회사와 관련하여 심의한 [별표1]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룹 경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31.>

⑤ 제2항 각 호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안건을 부의할 이사회 개최 전 회계연도말 또는 당해 회계연도 12월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 중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등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기준을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⑥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종합적인 경영분석보고

2.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의 결과

3.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4.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8.01.>

제 12 조(위원회) ① 이사회는「상법」과 「상호저축은행법」등 관련법률을 준수하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를 두어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01.>

②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③ 각 위원회 구성 등 세부 운영방안은 각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제안설명) 이사회 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은 안건 관련 부문장 또는 본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부서장 및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제 14 조(의견의 청취) 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5 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결의요건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개정 2016.8.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변경 및 주주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준법감시인의 해임, 위험관리책임자의 해임,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개정 2012.8.16, 2013.9.30.> <개정 2016.8.01.>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9.30.>

④ 이사는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 16 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안건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을 경우 그 이사의 성명과 반대사유를 같이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 후,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17 조(사외이사의 활동지원 등) ①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 각종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 숙박비, 식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 18 조(손실보상) 회사는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현직 각 이사에 대하여 동인이 전·현직 이사라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 기타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판결금액, 과징금, 벌금, 화해금액, 기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 19 조(이사회 지원조직 운영) 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지원을 활성화하고,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거나, 지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략기획부에 이사회 지원 업무를 분장한다. 단, 각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개최 등을 위하여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간사 및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2.26., 2023.1.2., 2024.1.8.>

부 칙(2012.1.12.)

이 규정은 2012.1.12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16.)

이 규정은 2012.8.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30.)

이 규정은 2013.9.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26.)

이 규정은 2015.3.0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25.)

이 규정은 2015.3.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29.)

이 규정은 2015.6.0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01.)

이 규정은 2016.8.0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31.)

이 규정은 2016.10.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2.)

이 규정은 2016.12.2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이 규정은 2017.3.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29.)

이 규정은 2017.6.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6.)

이 규정은 2018.1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10.)

이 규정은 2021.9.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7.19.)

이 규정은 2022.7.1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

이 규정은 2023.1.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31.)

이 규정은 2023.1.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27.)

이 규정은 2023.4.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8.)

이 규정은 2024.1.8.부터 시행한다.

[첨부 3]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6.08.01 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지주회사"라 함은「금융지주회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식회사 KB금융지주를 말한다.

제 3 조(기능) 위원회는 지주회사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이사 후보를 심사하여 추천한다.

제 4 조(구성) ①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인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소집) ① 위원장은 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조(결의)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자를 결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은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 7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한다.

② 그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의 성명과 반대사유를 같이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 후, 출석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8 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이사회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장이 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 9 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내규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표이사 경영승계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6. 8. 1)

이 규정은 2016. 8.1부터 시행한다.

[첨부 4]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6.08.01 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의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 4 조(권한) 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제 5 조(소집권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최초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참석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된다.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조(소집절차)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후보자격 검증)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하여 법령에 정하여진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한다.

제 8 조(결의사항)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제 9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등 결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한다.

② 그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의 성명과 반대사유를 같이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 후, 출석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1 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이사회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장이 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부 칙(2016. 8. 1)

이 규정은 2016. 8. 1 부터 시행한다.

[첨부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2.01.12 제정 2015.11.03 개정 2016.08.01 개정 **2022.07.19.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적용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2016. 08. 01 본조개정)

② 삭 제(2016. 08. 01 본항 삭제)

제 4 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권한)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위원회는 경영/IT/Digital, 금융, 회계/재무, 법률 등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검증한다. (2022. 07. 19.본항개정)

제 6 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소집통지)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8 조(결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2022. 07. 19 본목개정)

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2022. 07. 19.본항개정)

제 9 조(후보자격 검증)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하여 법령에 정하여진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한다.

제 10 조(사외이사후보추천 제한) 위원회는 당사자를 제외한 이사회 재적이사를 기준으로 1차 중임의 경우 과반수, 2차 중임 이상의 경우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위의 동의를 얻는 절차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1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그러나,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12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3 조(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4 조(외부자원의 활용) 위원회는 소정의 기능 및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5 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이사회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장이 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2016. 08. 01 본조개정)

부 칙(2012.01.12)

이 규정은 2012.01.12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03)

이 규정은 2015.11.0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8.01)

이 규정은 2016.08.0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7.19)

이 규정은 2022.07.19 부터 시행한다.

[첨부 6]

보상위원회규정

2016.08.01 제정 2016.10.28 전부개정 2017.03.21 개정 2019.12.10 개정

제 1 조(목적 등) ① 이 규정은 “보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또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금융투자업무담당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위원회가 결의한 직원을 의미한다.
3. “변동보상”이란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외에 지급되는 성과급을 의미한다.

제 2 조(구성) ①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1 인을 포함하여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들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조(기능) ① 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회사의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보상체계의 설계와 운영을 감시한다.

② 위원회는 회사의 성과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성과보상체계가 재무상황 및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4 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1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대상자 결정
2. 경영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수립 및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본항 개정)(호 체하)
3. 위 제 1 호의 대상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4. 위 제 1 호의 대상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위 제 1 호의 대상자의 보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6.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7. (2017.03.21 본호 삭제)
8. 기타 성과보상체계와 관련되어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12.10 본항 개정)(항 체하)

1. 회사의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의 수립과 관련한 사항
2. 회사의 성과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관련한 사항

~~②~~ ③ 위원회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7.03.21 본항 개정)

1. 이사보수규정, 집행임원규정에서 정한 경영진 성과급 환수사유 발생시 관련 사항
2. 기타 성과보상체계와 관련되어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조(소집) ① 위원회는 매년 1 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와 회의 자료를 위원회 개최일 3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 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 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 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 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 7 조(의사록 등) ①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내역은 서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 8 조(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9 조(외부자원의 활용) 위원회는 소정의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0 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경영지원본부장이 담당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 11 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이사회규정」등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계약하는 경영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8)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21)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03.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0)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12.10부터 시행한다.

[첨부 7]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2012.01.12 제정 2012.08.16 개정 2015.03.30 개정 2016.04.06개정 2016.10.31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사 중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외이사 수가 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08.16>

② 위원장은 사내이사를 제외하고 리스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본항신설 2012.08.16]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전행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전략 및 정책을 수립, 승인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행 리스크관리전략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설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본호신설2016.10.31>
4. 각종 리스크 한도의 설정 및 한도 초과의 승인<본호신설 2016.10.31>
5. 내부자본기준 리스크 한도설정 및 배분<개정 2016.04.06>
6. Total Exposure 한도설정 및 배분
7. 신용평가시스템의 적용 및 모델의 중요한 변경 및 개선
8. 리스크 측정방법론 및 요소의 중요한 변경 및 개선
9.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10. 리스크관리협의회지침의 제정 및 개정
11. 리스크관리 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본호신설 2016.10.31>
12. 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본호신설 2016.10.31>
13. 기타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회사 등의 설립, 취득, 및 추가출자(자회사 등이라 함은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자회사를 말한다.)
2. 신사업 진출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투자
3.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신설 2012.08.16]

④ 위원회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관리 및 한도관리 현황
2. 리스크관리협의회, 여신심사위원회의 활동 내역
3. 신용평가 및 리스크 측정시스템 검증 결과
4.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이행현황 [본호신설 2012.08.16]
5. 리스크관련 중요사항의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본호신설 2012.08.16]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리스크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지주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5.03.30]

⑧ 제2항 각호에서 정한‘자기자본’의 기준은 이사회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른다. [본항신설 2012.08.16]

제4조(소집) ① 위원회는 매분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본항 개정 2016. 10. 31>

③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제1항에서 정한 소집통지 방법으로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6.10.31>

제5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험관리책임자가 담당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5.03.30> <본항개정 2016.10.31>

제8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 감독규정 등 관련 외규 또는 내규의 변동에 따른 당연 개정사항이나 단순한 문구 수정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전결로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03.30> <본조개정 2016.10.31>

부 칙 (2012.08.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08.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의 운영)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이사회 개최일 이전에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2015.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03. 30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의 운영)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이사회 개최일 이전에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2016.04.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04. 06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의 운영)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이사회 개최일 이전에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0.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의 운영)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이사회 개최일 이전에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첨부 8]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2012.1.13.제정 2012.11.7.개정 2013.11.20.개정 2014.5.21.개정 2017.8.23.개정 2018.12.6.개정

2019.4.23.개정 2020.8.3.개정 2022.7.1.개정 2023.5.1.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호저축은행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기하여 업무의 효율화,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 금융관련 제반 리스크의 최소화, 상호저축은행(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내부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법령 및 기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상근감사위원 및 주관부서) 감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상근감사위원이 주관하고 감사보조조직은 감사활동의 수행을 보조한다. 단, 상근감사위원이 없는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업무를 위임 받은 책임자는 동 직무규정에 근거하여 내부감사를 주관하여 수행한다.

제 2 장 감사의 구분 및 방법

제4조(감사의 구분) 감사의 종류는 기능별로 재무감사(financial audit), 준법감사(compliance audit), 업무감사(operational audit), 경영감사(management audit), IT 감사(information system and technology audit)로 구분한다.

1. 재무감사(financial audit)는 회계기준 및 회계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2. 준법감사(compliance audit)는 관계법령, 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해 설치된 회사내 준법감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3. 업무감사(operational audit)는 조직구조 분석이나 업무분배 방식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및 준법감사 부문 이외의 조직내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점검·분석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4. 경영감사(management audit)는 위험(risk) 및 통제(control)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방식·절차 등의 적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보좌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5. IT감사(information technology audit)는 IT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제5조(감사의 유형) 감사위원회의 요청 또는 위임을 받은 상근감사위원은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일상감사는 <별표: 일상감사 사항> 에서 정하는 임원급 이상이 결재하는 업무에 대하여 상근감사위원이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반대의견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동 건에 대한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동 건과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종합감사는 정기적인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재무, 준법, 업무, 경영, IT 등 기능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기능별 프로세스의 유효성 평가, 문제점 적시, 개선방안 제시 등을 포함한 종합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서 상근감사위원의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7.1.>

제 3 장 상근감사위원, 감사보조조직 및 감사인

제6조(독립의 원칙) 감사위원회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실제 감사를 실시하는 상근감사위원, 감사보조조직의 직원(이하 “감사역”이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제7조(감사역의 행동규범) ① 감사역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

②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임의로 공개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직무수행은 관계법규 및 지시 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④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 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감사역 인력확보) ① 상근감사위원은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팀 단위의 감사보조조직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팀 단위의 조직이라 함은 간부급의 팀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조직을 지칭한다.

② 감사보조조직 인력중 적어도 1명은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인력이라 함은 공인회계사 (CPA), 공인내부감사사사(CIA), 공인재무분석사(CFA), 변호사 등의 공인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③ 공인자격증을 보유하는 전문인력 채용이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여의치 않을 경우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제2항의 공인자격증 이외에 한국금융연수원 등 금융 관련 자격인증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의 자격증을 말한다) 소지자 또는 여신, 준법감시, 자금세탁방지, IT 기타 해당업무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상근감사위원이 감사역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

제9조(감사역의 자격) ① 감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선발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근무기간 3년 이상(다만, 신설 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으로 최근 2년간 근무 성적이 양호한 자.
2. 상근감사위원이 감사역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삭 제>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역이 될 수 없다.

1. 견책 이상의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임시직 또는 조건부 임용인 자. 단, 감사역 인력의 3분의 1이하로서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사위원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개정 2022.7.1.>

제10조(감사역의 인사 및 대우) ① 감사보조조직 인력의 보직 및 전보는 상근감사위원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지체없이 행한다. 다만 지체없이 조치할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감사역은 3년내 이동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승진전보 시에만 예외로 한다.

③ 감사역에 대하여 별도의 인사평가 기준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④ 감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계약직 전문인력의 경우 감사의 판단에 따라, 외부 충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감사역에 대한 이동 및 평가는 감사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제 4 장 감사운영

제11조(계획의 수립) 상근감사위원 또는 감사보조조직의 책임자는 회계연도 종료 전 다음 회계연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감사의 실시) 감사 실시에 관한 절차, 세부지침 및 감사 요령은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감사업무지원 및 긴급조치) ① 피감사부서장은 감사역이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직원의 근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감사역은 감사도중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피감사부서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상근감사위원,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긴급조치요구를 받은 피감사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7.1.>

제 5 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14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역은 감사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고, 차기에 개최되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 종료 즉시 구두로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감사위원회는 적어도 분기 1회 이상 회사 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 여부를 평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별지 제1호 서식>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부서별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
2. 사업부서 별 영업계획·전략 수립 프로세스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 여부
3. 영업상 회계시스템 및 기준 변경 등의 준법성 및 적정성 여부
4.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5. 부서별 업무 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6.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7. 준법감시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8. 조직구조 상 내부견제시스템의 적정성 여부
9. 명령휴가제도 운영 현황 <추가 2019.4.23.>

제16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는 매 사업연도마다 실시하며, 그 평가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이사회에 대면보고 후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추가 2018.12.6. 이하 조체하>

제17조(감사 결과 처리)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대표이사 및 담당부서에 다음 각 호의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규정 또는 제도의 개선
2.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에 대한 주의, 문책 또는 변상

제18조(조치결과보고) ① 피감사부서장 또는 관련부서장은 감사결과 통보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해진 기일 내 에 감사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역은 조치결과보고를 상근감사위원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결과 처리 사항 및 조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에 대하여 차기 감사 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제19조(재심사청구) ① 피감사부서장 또는 관련부서장은 감사결과의 지적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지시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상근감사위원 또는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 다른 감사역을 파견하여 조사하거나 피감사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재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제 6 장 기 타

제20조(사고보고) ① 각 부서의 장은 부정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상근감사위원을 경유하여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감사역은 감사위원회의 명을 받아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감사역은 제2항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제21조(벌칙)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감사역의 의무를 위배한 자
2. 감사역의 권한에 의한 감사역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 <개정 2022.7.1.>
3. 긴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태만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9]

지배구조내부규범

2016.10.31 제정 2020.7.1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KB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이 주주와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 ① 저축은행은 지배구조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지배구조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매년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저축은행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의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공시 및 그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정 등) 이 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변경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상호저축은행법, 지배구조법, 상법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을 말하고, 그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 법률”이라 한다),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의 구성 현황

제5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6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표이사가 한다.

②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 규정 제6조 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1항에 따라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이사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사외이사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저축은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제9조(이사회 권한) ① 이사회는 지배구조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도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 임원 등과 저축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에서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종합경영분석
2.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 및 의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지배구조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저축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저축은행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는 저축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저축은행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저축은행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 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배구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이사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2조(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려는 경우, 그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 퇴임사유 및 절차) ① 이사의 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3. 관련 법률, 정관 등에서 정한 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경우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1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일 1주간 전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그 소집 회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제16조(의결권 행사 방법) ① 이사회의 의결은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제1항의 의결정족수 계산에서 출석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그 활동내역을 기초로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구성·기능

제18조(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①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상위원회

②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의결은 그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법령, 내규 또는 이 규범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대표(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는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자로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 규범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및 소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각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 후보는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제1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지배구조법 제19조 제6항 후단 및 제7항을 적용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관계자의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그 역할 및 권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⑧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각 감사위원에게 개최일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저축은행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6.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3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절차 없이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보상위원회) ① 보상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③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23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24조(임원별 자격요건) ① 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8조를 각각 적용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8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저축은행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절 임원의 권한·책임

제25조(이사 등의 권한과 책임) ① 저축은행은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한다. 대표이사는 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저축은행의 업무를 분장 집행할 수 있다.

제26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 등의 권한과 책임) 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업무집행책임자는 저축은행의 내규 등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27조(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 ① 준법감시인은 저축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절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29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주주총회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저축은행의 내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을 적용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④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의 내규 등에 따른다.
제31조(임원의 퇴임) ① 이사 퇴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적용한다.
②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의결로 해임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선임자(선임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의 해임 의결로 퇴임한다.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의 해임 결의로 퇴임한다. 이 경우 해임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저축은행의 내규에 따라 대표이사가 해임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32조(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① 저축은행은 임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임원의 경영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저축은행에서 정한 내부 또는 외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① 저축은행은 사내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내부 또는 외부 교육 및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임원을 선임할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34조(임원 성과평가 등) ① 임원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임원의 담당업무 성과 등에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임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임원의 임면, 보수지급 등에 활용한다.

제35조(보수의 지급) ①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수체계에 관하여는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평가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개별 위촉(또는 위임)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1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36조(경영승계) ① 이사회는 지주회사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이사후보에 대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20.7.17>

제37조(경영승계 절차 개시)

① 최고경영자(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영승계 절차(이하 "경영승계 절차"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개시된다.

1.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2. 최고경영자의 사임, 해임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제7조 및 제8조의 임원 자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이사회가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8조(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지체없이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저축은행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저축은행 운영 및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비상상황 발생시 비상계획) ① 최고경영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② 최고경영자가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지체없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7조의 경영승계 절차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제40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의 관리업무를 인사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 부서는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41조(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저축은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쉽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 다만,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제42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저축은행,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5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43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6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44조(최고경영자의 임기 및 역할 등)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정관 등에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는 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최고경영자는 관련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최고경영자의 퇴임 및 평가) ① 최고경영자의 퇴임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적용한다.
②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범이 정한 사항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지배구조법 부칙 제2조 내지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부칙이 정하는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0.7.17)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임원선임 심사표

종 합 의 견	자격요건 심사결과 충족
	2023년 12월 28일 ㈜KB저축은행 대 표 이 사 서 혜 자

【첨부서류】

종 합 의 견	자격요건 심사결과 충족
	2023년 12월 28일 ㈜KB저축은행 사외이사 서 종 군 (인) ㈜KB저축은행 대표이사 허 상 철 (인)

【첨부서류】
1.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2.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3.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5. 외국인의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6.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7.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종 합 의 견	자격요건 심사결과 충족
	2023년 12월 28일 ㈜KB저축은행 사외이사 심 동 욱 (인) ㈜KB저축은행 대표이사 허 상 철 (인)

【첨부서류】
1.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2.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3.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5. 외국인의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6.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7.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